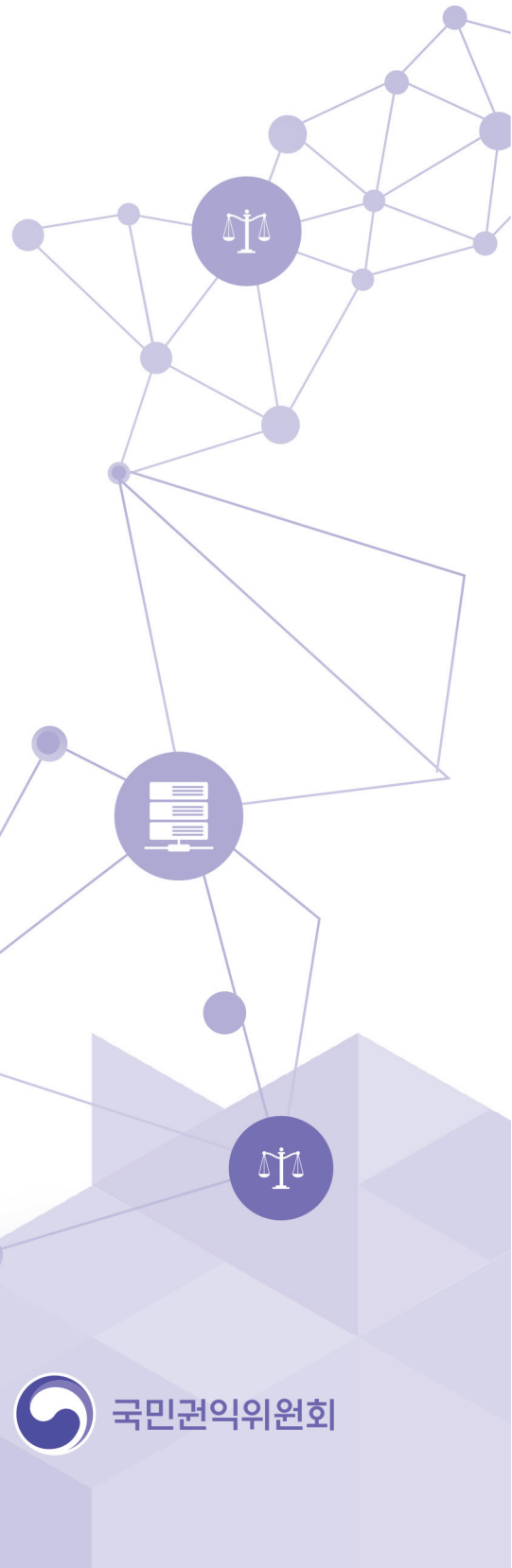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제1장

제1절 '18년도 부패영향평가 개요	06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08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1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5
제5절 '18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 내용	18

2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제2장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28
1. 준수	28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8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9
3) 특혜발생 가능성	52
2. 집행	61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61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72
3) 재정누수 가능성	80
3. 행정절차	87
1) 접근의 용이성	87
2) 공개성	101
3) 예측 가능성	109
4. 부패통제	118
1) 이해충돌 가능성	118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31
제2절 행정업무별 사례	141
1. 계획 업무	141
2. 공사 업무	144
3. 부과·처분 업무	148
4. 신고·등록·발급 업무	151
5. 위탁·대행 업무	163
6. 인사 업무	166

3

현행 자치법규
평가 사례

제3장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172
제2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174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7
제4절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78
제5절 조치사항	191

4

자발적
개선 사례

제4장

제1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194
--------------------	-----

부록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24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235
3. 관련 법령	247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47
2)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249

2018
부패영향평가
사 례 집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제1장

제1절 '18년도 부패영향평가 개요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5절 '18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 내용

제1절 '18년도 부패영향평가 개요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1 의의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사전적·예방적 부패통제 시스템으로 크게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행법령 평가로 나눌 수 있음

2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수립·통보,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별 부패영향평가 절차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목적

-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 가능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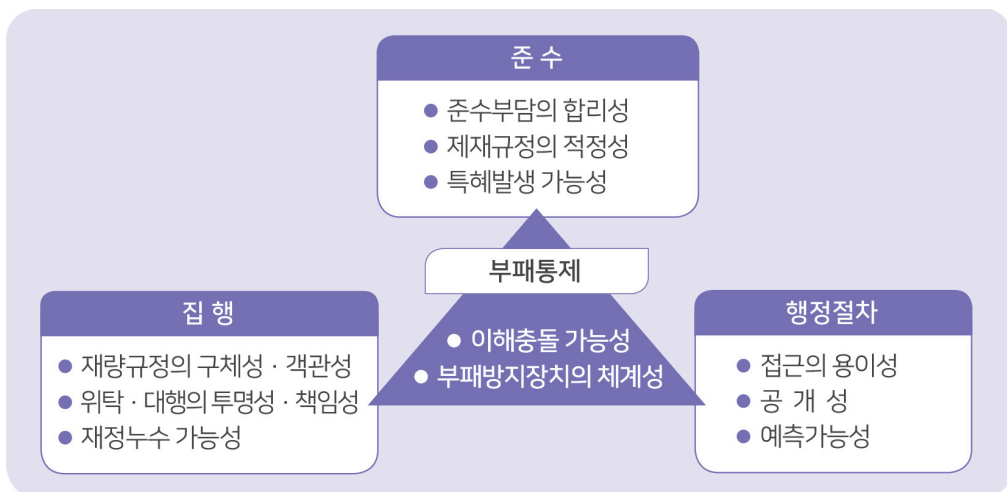
4 필요성

-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 발생 방지에 한계
 -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 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영 제30조제1항)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 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
 - ‘준수’는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 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은 해당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는 해당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부패통제’는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등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패통제장치 및 부패방지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으로 세분화됨



1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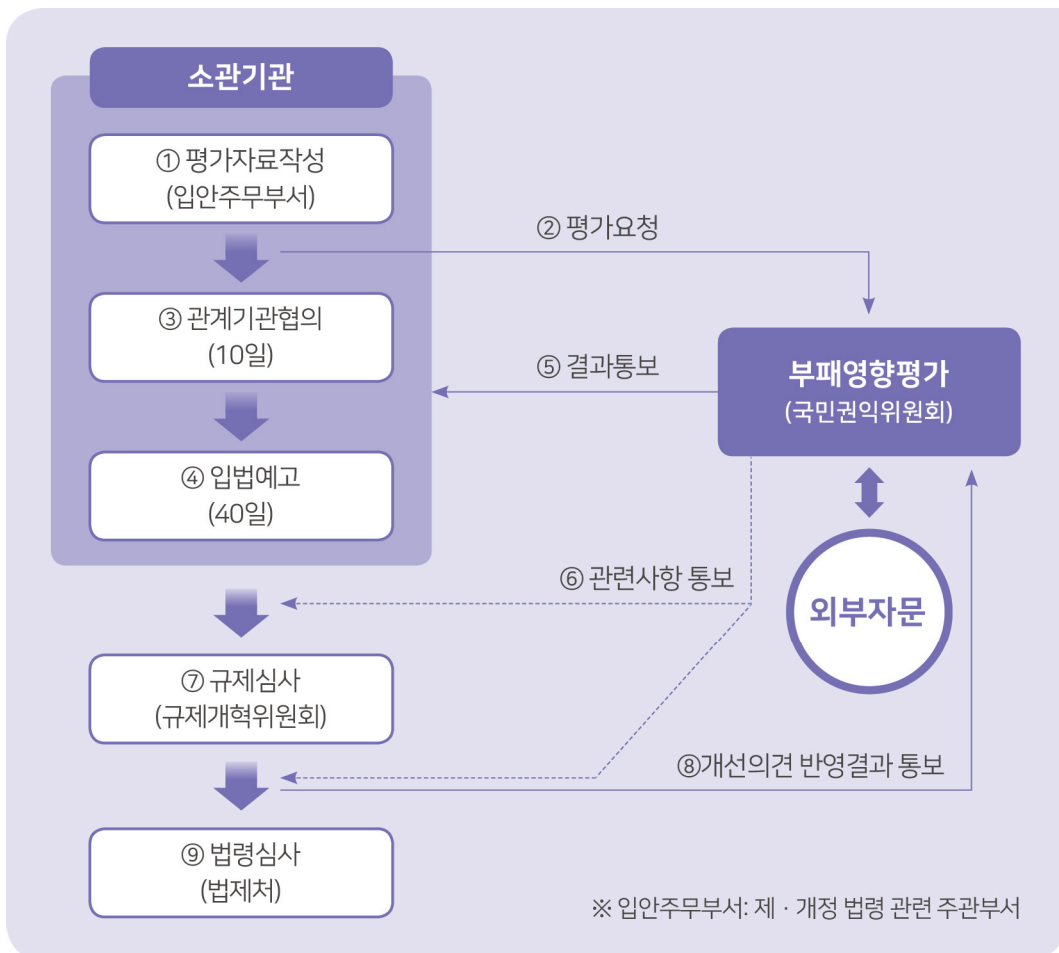
4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 각 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시 평가에 필요한 제·개정안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위원회는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인 4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소관 기관에 통보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 제외 법령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법령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 제·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대상 제외법령

(부패영향평가지침 제3조의 2 참조), 부패영향분석과-1125(2016.4.11.)문서 참조

- 개정법령(안)은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첨부('20 부패영향평가 지침, p27 참조)
- 제정법령(안)은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를 첨부('20 부패영향평가 지침 p27, 29 참조)

- 평가요청시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고
일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문별 개정사유서 •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 요청시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정·전부 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조문별 제·개정사유서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 요청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 평가자료의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공청회·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는 담당자 e-mail 등 활용
-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부패영향평가 요청시 반드시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문 시행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가. 평가기간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평가방법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여부를 체크 후 필요 시 관련 의견 제출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1 현행 법령 평가과제 선정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 수립

- 위원회는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소관기관에 현행 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
 -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 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

나. 현안과제 평가

- 중장기 과제와 별도로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이나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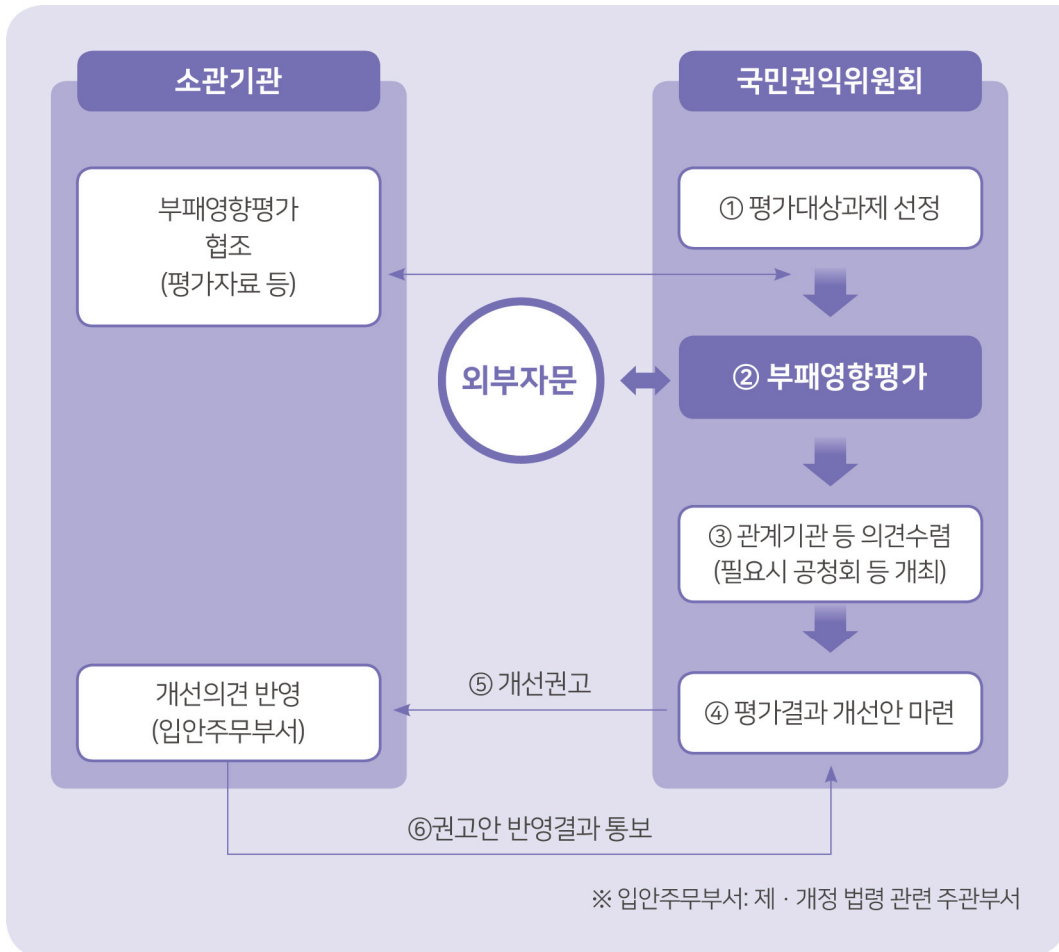
- 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 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 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법령등의 소관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법령등의 소관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평가 요청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령등의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위원회는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지 기 권고한 현행법령 개선권고 과제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5절 '18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 내용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1 '18년도 부패영향평가 총평

2018년도에는 총 1,614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29개 법령에 대하여 249건의 개선권고 의견을 통보하였다. 특히, 항공기 품질관리 및 안전인증 기준 부합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보고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이슈분야 법령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로 시의성 있는 개선권고 의견을 도출하는데 평가 역량을 집중하였다.

〈 중점 개선권고 분야 〉

-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화 (60건, 24.1%)
- 민원처리 시 제출서류 명확화, 처리절차 공개 등 행정업무의 예측 가능성 제고 (47건, 18.9%)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각종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34건, 13.7%)

또한 각급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의 책임성 강화 등 지방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현행법령 평가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총 1,614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이 중 129개의 법령안에서 249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령 수를 기준으로 한 기관별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령 평가요청 상위 부처는 국토교통부(236개), 보건복지부(119개), 환경부(112개) 등 순이며, 개선권고 통보 법령 수는 보건복지부(아동수당법 시행령 등 25개), 국토교통부(케도운송법 시행령 등 15개), 환경부(물기술 산업법 시행령 등 11개) 등 순으로 많았다.

현행법령은 지방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문제 발생, ▲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미흡 사례 등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등을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는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해서는 각 기관 실무자의 부패영향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문가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자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운영하였다.

2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중앙부처의 의뢰법령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2018년에는 총 129개 법령안에서 249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개선권고를 하였다.

가. 제·개정 법령안 접수·처리 현황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1,614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받아 평가를 하였고, 그 중 1,485개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로 통보하고, 129개의 법령안에서 249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보완하도록 하였다.

《 접수·처리 현황 ('18.1.1.~12.31.) 》

접수·평가	평가결과 통보		
	원안동의	개선권고	개선권고건수
1,614개 법령	1,485개 법령	129개 법령	249건

나. 평가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기준별로는 4개의 평가분야 중 집행분야(89건, 35.7%)에서 개선권고가 가장 많았고, 11개의 평가기준별로는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60건, 24.1%), 예측 가능성(47건, 18.9%), 이해충돌 가능성(34건, 13.7%) 등 순으로 개선권고가 도출되었다.

《 평가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129개 법령 249건) 》

평가분야	평가기준	개선 의견 건수
준수 (43건)	준수부담의 합리성	7
	제재규정의 적정성	33
	특혜발생 가능성	3
집행 (89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60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24
	재정누수 가능성	5
행정절차 (68건)	접근성의 용이성	7
	공개성	14
	예측 가능성	47
부패통제 (49건)	이해충돌 가능성	34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5
합 계		249

다.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법령별(1,614개)로는 산업개발 관련(442개, 27.4%), 일반행정 관련(310개, 19.2%), 환경보건 관련(308개, 19.1%) 법령이 많았고, 개선법령별(129개)로는 환경보건 관련(43개, 33.3%), 산업개발 관련(33개, 25.6%), 일반행정 관련(18개, 14.0%) 법령 순으로 개선권고가 많이 도출되었다.

《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18.1.1.~12.31.) 》

법령 \ 분야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평가법령(개)	1,614	310	105	128	185	442	70	308	56	10
개선권고 법령(개)	129	18	7	7	8	33	10	43	3	-

3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는 공공부분과 연계된 민간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제1,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7.9.26, '18.4.18.)에서 공공부분과 연계된 민간분야에 대한 부패방지정책 추진의 중요성 대두

'90대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공공부분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당해 지자체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부패소지가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개월에 걸쳐 민간위탁 조례 규정과 민간위탁 실태를 조사하여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문제 발생,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미흡 등 아래와 같은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었다.

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92.6%(225곳)
- ▶ 민간위탁 추진 시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90.9%(221곳)

②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문제 발생

- ▶ 수탁자 선정기준·배점 등의 사전 공개를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85.2%(207곳)
-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97.1%(236곳)
- ▶ 수탁자 선정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지자체는 2곳

③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미흡

-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75.3%(183곳)
- ▶ 재계약 시 주요검토 기준으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명시하지 않은 지자체가 65.8%(160곳)
- ▶ 재계약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56.0(136곳)
- ▶ 수탁자의 중요한 위무위반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63.0(153곳)

이에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 공개,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선정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수탁자의 위탁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취소사유로 명시하는 등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4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평가 등 실효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기관별로 내실 있는 자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등 각 기관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공직유관단체가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 실적을 '부패방지시책평가지표'로 운영하여 기관내 법무담당 부서와 사규 입안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내 광범위한 부패유발요인의 적극적 개선을 도모하였다.

2018
부패영향평가
사 례 집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2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제2장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제2절 행정업무별 사례

■ 기준별 사례 목차

평가 항목	평가기준	주요 검토 내용	사례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9p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33p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p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40p •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45p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49p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방위사업법 53p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56p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58p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 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p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65p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68p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관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74p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p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78p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81p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84p

평가 항목	평가기준	주요 검토 내용	사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88p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0p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6p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2p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05p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107p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110p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p • 소방기본법 시행령 115p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 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20p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24p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26p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2p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34p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38p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개요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령 등의 적용 대상자가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통해 그 부담을 면제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사례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29조(손실보상의 절차) ①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8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현황

- (추진배경) 국제해사기구(IMO)의 e-Navigation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에 이어 2021년부터는 대국민 e-Navigatio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

- 이에 따라 e-Navigation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국민 e-Navigation 서비스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 ICT 기술의 적용으로 해상교통관리 체계를 고도화, 지능화하여 해양사고의 저감 및 해상교통 효율화에 기여

- (주요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수립(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8~14조),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15~17조), 해상무선통신망 등 보호조치, 손실보상(25~29조)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고(안 제23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

-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의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명시(안 제29조제1항)

※ 해상무선통신망 설비의 설치·보수·조사 등을 위한 타인의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제22조) 및 장애물의 제거(제24조), 토지 등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등에 대한 원상회복(제28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기한도 동일

❖ 관련 규정

제22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① 해상무선통신망 설비의 설치·보수, 해상무선통신망 설비 설치를 위한 조사·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설치·보수나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29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등의 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할 때에는 토지등의 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29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장애물의 제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매설물(埋設物)·기기(器機)·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 해상무선통신망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해상무선통신망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상태변경·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인공구조물등의 제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

제28조(원상회복의 의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표지물의 설치 및 제2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문제점

- 손실보상의 청구기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청구권자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 보호에 미흡
 - 법률안 제29조제1항은 손실보상 청구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로 손실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의 원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어 손실 보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 특히, 제28조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등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사전에 알기 어려우므로, 사유 발생일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등에 출입, 장애물 제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등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토지보상법」에 준하여, 손실보상 청구기한 개선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예 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개정안	개선 의견(예시)
제29조(손실보상의 절차) ①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8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u>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u>	제29조(손실보상의 절차) ①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8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입법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 2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 3]

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 제1항 관련)

구비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내 발행 원본	각 1부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4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일반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만 해당한다)	1부
신원진술서	1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인증서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1부
면접용 경력확인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응시원서 제출 시 포함)	2부

비고: 사진 4매는 응시원서용 2매, 신체검사용 1매, 신원진술서용 1매이며,
인터넷 지원의 경우에는 응시원서용 2매를 제외하고 2매만 제출한다.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현황

- 개정령안은 복무연장으로 현역으로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
 -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에서 정보화 능력을 삭제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3] 에서 응시원서 구비서류를 변경

문제점

- 신청인 확인용 사진의 규격 크기가 공무원 응시원서 등 공공기관의 사진규격과 달라 별도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및 불편초래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단일화(3.5×4.5)를 권고하였음에도 해당 응시원서에는 개선되지 않음.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5-341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 2015. 9.21)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응시원서 사진규격(3.5센티미터×4.5센티미터) 개선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법령 개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3] <개정 2018. 8. 24.>

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제1항 관련)

구비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내 발행 원본	각 1부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4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일반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만 해당한다)	1부
신원진술서	1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인증서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1부
면접용 경력확인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응시원서 제출 시 포함)	2부

비고: 사진 4매는 응시원서용 2매, 신체검사용 1매, 신원진술서용 1매이며, 인터넷 지원의 경우에는 응시원서용 2매를 제외하고 2매만 제출한다.

사례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지 제12호서식]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뒤쪽)

퇴소 처리					
퇴소일			담당	총무	원장
퇴소 사유					
목적지 (전원기관명)					
인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계		
	직 업				
보관금품 수령증					
품 명	수량(금액)	보관장소	품명	수량(금액)	수령자 서명 또는 인
특기사항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

현황

- 노숙인 등을 입·퇴소 절차에 따라 복지시설에 입·퇴소시키는 경우 신상기록카드 등 기록 비치
 - 제3조와 별지 제1호 서식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을 할 때 설립발기인과 임원 취임 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규정
- 노숙인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타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노숙인이 시설 퇴소시 타 복지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인수자의 기본사항을 기록하면서, 주민등록번호도 요구

문제점

- 노숙인은 복지시설에 자발적 입·퇴소 의뢰에 의해 입·퇴소 심사위원회 등의 절차에 따른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 연관이 없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필요
 - 노숙인이 자발적 퇴소의 경우는 타인의 정보가 불필요가 하며, 다른 복지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관련 시설 및 인수자에 대한 기본정보(시설명, 연락처, 인수자명 등)로도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수자에게 과도한 준수 부담 부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
 - 별지 제1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 등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일련번호				입소: 년 월 일 퇴소: 년 월 일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 번호								
등록기준지	사진 (3cm×4cm)											
주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직업·경력		병역			
종교	취미		특기									
키	몸무게		건강 상태									
상태	장애 유형	☐ 정신질환 ☐ 지체장애 ☐ 언어·청각장애 ☐ 시각장애 ☐ 지적장애 ☐ 기타										
	대상 구분	☐ 전원조치 ☐ 장기보호 ☐ 자활지원 ☐ 재활지원										
연고자 성명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주소(전화번호)							
보관금품	품명	수량(금액)	보관장소	품명	수량(금액)	보관장소						

작성자 : 인
시설의 장 : 인

(뒤쪽)

퇴소 처리					
퇴소일			담당	총무	원장
퇴소 사유					
목적지 (전원기관명)					
인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관계		
	직업				
보관금품 수령증					
품명	수량(금액)	보관장소	품명	수량(금액)	수령자 서명 또는 인
특기사항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개요

- 평가 대상인 법령, 자치법규 등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벌칙, 과태료 등)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
- 제재수준이 미약할 경우 실효성이 없고, 제재수준이 과도할 경우 부패행위를 통해 제재 회피 시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재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

평가내용

- 제재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관련규정·내용을 검토
- 제재규정의 필요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지 검토

사례 1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 다. (생략)

라.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0조 제1항 1호				
1) 장애인근로자 고용인원 기준을 미달하게 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기준을 미달하게 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 (관련규정)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추가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규정이 신설* (2018.6.12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신설

* 위법행위를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지정취소 외에 시설개선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시설에 대한 개선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와 품질인증 및 생산시설의 지정제도를 운영 (2008.3.21 법 제정)
 - 개정안은 생산시설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고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
 - 또한, 영업정지의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그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2018.9.7.)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총 지정수 : 566개소

번호	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품목	지정유효기간	시설 유형
1	2008-002	가나안근로복지관	백승완	경기도 성남시	031-707-0546	쇼핑백, 재생토너카트리지	2017.11.21.~ 2020.11.20.	장애인 근로사업장
2	2008-003	사복)구세군장애인재활 작업장	장순섭	경기도 수원시	031-258-4580	화장지류	2017.11.21.~ 2020.11.20.	장애인 보호작업장
3	2008-004	엘림보호작업장	김범진	경기도 수원시	031-695-6530	인쇄물, 장갑류, 행정봉투	2017.11.21.~ 2020.11.20.	장애인 보호작업장
4	2008-005	늘푸른직업재활원	윤정숙	경기도 고양시	031-912-4988	감열지, 사무용지류, 재생토너카트리지	2017.11.21.~ 2020.11.20.	장애인 보호작업장
5	2008-006	일곱터	김창연	경기도 파주시	031-959-7015	가구류	2017.11.21.~ 2020.11.20.	장애인 근로사업장
562	2018-034	이후	박승리	인천광역시 동구	010-7705-7504	세탁	2018.08.01.~ 2021.07.31.	장애인 보호작업장
563	2018-035	한우리보호작업장	이상익	대구광역시 북구	053-384-1408	소독방역	2018.08.01.~ 2021.07.31.	장애인 보호작업장
564	2018-036	한우리보호작업장	정영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070-7209-2928	카페	2018.08.01.~ 2021.07.31.	장애인 보호작업장
565	2018-037	새뜰보호작업장	황인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070-7576-0072	종이컵	2018.08.01.~ 2021.07.31.	장애인 보호작업장
566	2018-038	사)한국장애인사진 콘텐츠협회 인쇄사업본부	박배근	대전광역시 동구	042-710-8890	인쇄물	2018.08.01.~ 2021.07.31.	장애인 복지단체

(출처 :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유형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2.20기준)	계
계		4	14	12	9	8	47 (100%)
취소 사유	고용위반	-	2	1	-	-	3 (6.4%)
	직접생산위반	1	2	6	6	4	19 (40.4%)
	고용 및 직접생산 위반	3	10	5	3	4	25 (53.2%)

* '17년 :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인 시설 포함(변동가능)

(출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제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일 불명확

- 위반횟수 산정 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최초 행정처분에 따른 기준일을 규정한 반면, 2차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처분적용 기준일이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 (제재규정의 적정성) 행정처분의 가중을 회피할 목적으로 처분일을 늦추기 위한 로비 등의 부패행위를 유발할 소지가 있고, 2차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이 늦어질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참고) 관련사례('16.1. 감사원 감사결과)

* 舊 「음악산업진흥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되,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일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구청에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횟수 산정 시 기존 ‘행정처분일’로부터 ‘적발일’까지로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현행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영업정지 90일이 아닌 40일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5개 업소에 대해 20~50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

적발일	행정처분일	실제처분	정당	차이
'12. 2.21.	'12. 3.16.	영업정지 40일	-	-
'12.11.11.	'13. 3.27.	영업정지 4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50일

✓ 경감기준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부여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행정처분의 경감 여부 결정에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될 수 있어 행정처분을 감경하기 위한 로비 등 부패행위가 발생될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1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같은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토록 기준 명확화
-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하도록 개선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47호, 2018.11. 시행]

[별표 1] <신설 2018. 12.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줄일 수 있다. 다만, 제2호 마목 및 나목에 따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 1)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 2) 지정 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사례 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생략)

②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심사 또는 사후관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누락없이 사실대로 기재·보고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의 임원인 경우에는 인증심사 및 갱신 등 인증심사원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하고 있음

※ 유기식품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함

※ "유기"[Organic]란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함

〈관련 현황별 통계〉

- 친환경인증기관 현황('18.2.현재) : 62개소(국내 60, 해외 2)
 - 친환경인증현황('17) : 농산물(59,423호), 축산물(7,675호), 취급자(2,273호), 유기가공식품(742업체), 비식용유기가공품(7업체)
 - 친환경인증심사원 현황('17) : 465명
-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자격	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 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2016년 3월 24일까지 경력 5년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증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증심사원의 경우 위 표의 자격 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교육* : (교육시간) 30시간, (교육내용)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친환경농산물 및 인증관련 법령, 심사기준, 심사실무 및 평가방법

- 개정안은 인증심사원의 정보공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벌칙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문제점

- 인증심사원 외의 인증기관 임직원이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제공 한 경우 벌칙규정 미비
 - 개정안에서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과 정보제공 등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안 제27조제2항, 제60조2의2)
 - 법 제27조제1항에서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에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과 동일한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자료의 공개·제공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 인증심사원과 달리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규정은 미비 되어 있어, 인증심사원 외에 인증기관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가 유출되어, 불법행위나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

▶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5.(생략)

▶ 인증신청 서류에 기재되는 정보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 대표자 성명(법인, 단체명), 취급자 수,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경영관련 정보 등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인정보 1000여 건 유출(쿠키뉴스, '18. 2. 24.)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핵심기능인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조사위원들의 개인 및 사회 정보가 온라인상에 그대로 유출되어 조사위원들이 피해를 입음
- 유출된 정보는 조사위원의 이름과 지역, 소속 기관명, 부서, 직책, 직종, 연락처, 생년월일로 총 1029명분이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유사한 사건들이 공공기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보안점검 등 현장 실사를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인증심사원 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 등이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개인정보, 영업비밀 등)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벌칙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1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60조(벌칙) ①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1조의2제1호 또는 제45조제1호를 위반하여 인증과정, 시험수행과정 또는 공시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8. 27.>

사례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57조의6(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영 제41조의9제2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은 별표 17의5와 같다.

② ~ ⑤ (생략)

⑥ 한국관광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사업자의 시설 등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1.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진정·제보된 인증사업자
2. 기타 한국관광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사업자

⑦ (생략)

⑧ 한국관광공사는 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인증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한 경우와 조사를 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에게 인증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개정 이유

- (추진배경) 그 동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광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증제도를 개별적으로 도입·시행해 왔으나, 유사 인증제도의 난립으로 인증제 운영 비효율, 표준화된 평가모형 부재, 관광부문 인증 전문성 부재, 사후관리 부족 및 홍보효과 분산 등 여러 문제점 발생 → 이에 관광 부문 국가 단일 인증제를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도입·시행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18.6.시행)

법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품질인증 기준(별표17의5), 인증심사, 인증서발급 절차 등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

-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품질 인증사업자의 시설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시행규칙 제57조의6제6항),
 - * 법 제80조제3항 및 시행령 제65조제1항1의4호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
- 한국관광공사의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인증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57조의6제8항)

문제점

- 법률 상 근거 없는 인증취소 사유를 시행규칙에 신설하여 인증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제재 우려
 -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된 인증취소 사유 외에, 인증사업자의 조사 및 자료제출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인증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인증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 법 제48조의11에서는 인증취소 사유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을 규정
 - 법률상 근거 없는 인증 취소는 인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며, 제재가 과도한 경우 행정상대방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있음
 - ※ 법 제48조의10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 국내·외 홍보,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므로 인증사업자에게는 인증취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법률 상 근거 없이 규정한 인증취소 사유(인증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삭제
 - ※ 단, 인증사업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인증취소가 필요하다면, 법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에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3호, 2019. 10. 16., 일부개정]

제57조의6(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영 제41조의10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 인증 기준은 별표 17의5와 같다.

3) 특혜발생 가능성

개요

- 법령 등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특혜를 획득·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되거나 용인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평가내용

-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검토
 -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 검토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사례 1

방위사업법

평가대상 조문

제26조(계약의 특례 등) 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각목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국방연구개발”이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그에 필요한 국방과학기술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 가.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또는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개발
- 나. 미래도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다.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2.~8. (생략)

문제점

-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 사실 인정 기준 및 절차 부재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의 연구개발 성실 수행 여부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절차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 : 국방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 참여기관
 -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성실 연구개발 수행 인정 여부 결정 및 지체상금 면제 등 특정 계약자에 대한 특혜발생 요인으로 작용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의 연구개발 성실 수행 사실 인정 기준 및 절차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방위사업법

[법률 제15051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⑤ 생략

제46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평가대상 조문

제54조(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⑤ (생략)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다른 방식으로 계약 체결 가능

문제점

- ‘다른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종류, 내용 등 관련 규정 부재에 따른 담당자의 과도한 재량권 부여로 자의적 계약의 방법 선택 등 계약 상대방의 특혜를 발생시키는 계약체결 가능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다른 방법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개선

[예 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54조(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등) ① 국가 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u>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u> ②~⑤ (생략)	제54조(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등) ① 국가 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u>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⑤ (생략)

[참고 입법례]

【1】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⑤ (생략)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 ①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사례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7조의5(관리비 등) ① ~ ④ (생략)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⑥ (생략)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 개정이유

-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임방식과 선임주체를 구체화하고 관리비의 공개의무 및 관리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4997호, '17. 10. 31.)됨에 따라,
→ (주요내용) 입점상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설립된 법인의 관리업무 수행,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회계감사 및 관리규정 제정의무 등
- ▶ 개정안에서는 ① 입점상인의 동의권 행사방법, ② 관리비의 세부항목·금융기관 예치의무·공개 방법, ③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법,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및 관리규정 제정의무 등을 규정

-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들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관리비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4종의 기관을 명시(개정안 제7조의5 제5항)
 -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②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정하여 규정

문제점

- ✓ 일부 금융기관만을 관리비 등 예치 가능 기관으로 규정하여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발생 가능성 우려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 하여금 관리비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예치 가능한 금융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개정안 제7조의5 제5항은 특별한 이유 없이 4종의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관리비 등 예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에 한하여 관리비 등의 예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어 특혜발생 소지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일반 예금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모두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7조의3 (관리비등) ①~④ 생략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9.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비등의 명세(제1항제6호·제7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명세를 관리비등을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잡수입(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9로 이동]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개요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

평가방법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 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당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 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가 공개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사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주소
2. 시정권고의 이유
3. 시정권고의 내용
4. 시정기한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타인과 동일한 상호·상표를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등을 한 자에게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권고(행위 중지, 표지 제거 및 폐기 등)를 하는 경우, 시정권고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근거를 신설함

문제점

- 시정권고 사실 공표 기준 및 공표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
 - 시정권고 사실이 공표될 경우 그 시정권고를 받은 자의 사회적 가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느냐에 따라 공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공표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
 - 따라서,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자체를 막거나 비교적 파급효과가 적은 공표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패행위 가능성 존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기준 및 공표 방법을 명확히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이유
2. 시정권고의 내용
3. 시정기한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사례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9조의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것

가. 전문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

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수집·분석·생산할 수 있는 사람

다.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 ⑥ (생략)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생략)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은 소비자 피해의 예방·구제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의 근거 규정
 - 개정령안은 법의 위임에 따라 지원시스템 운영 위탁기준 규정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종합지원팀)
업무	• 물품등의 유통이력, 결함, 피해사례, 품질인증 등 소비자의 선택, 피해의 예방·구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 • 소비자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 피해구제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및 결과 안내 등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위탁 현황	비교공감·소비자톡톡 등 일부 콘텐츠의 제작·가공 및 운영은 ‘한국소비자원’에 위탁 ※ ‘18년도 위탁수수료 예산: 1.38억

문제점

- 지원시스템 운영 위탁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위탁기준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 적격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부정청탁 등 부패발생 우려
 - 또한, 적격성이 결여된 기관에 위탁 시, 소비자피해 예방·구제 등 지원시스템의 기능이 저해될 소지가 있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음
 - ※ 지원시스템이 소비자피해 예방·구제 업무의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원시스템 운영 부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게 될 악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원시스템 운영 위탁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자격기준 등 위탁기준을 구체화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개입을 방지하고, 소비자권익 증진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 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 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 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사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 3]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일반기준

3) 설치기준

가) ~ 라) (생략)

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만 설치한다. 다만,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 집 제외)의 설치기준 완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생 략)

문제점

-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청소년 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는 ‘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이라고 규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생략)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 5. (생략)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 8. (생략)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법령 적용대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어떠한 시설이 복합되어 설치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도 복합시설의 허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법령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43호, 2019. 8. 28., 타법개정]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일반기준(생략)

나. 단위시설·설비기준 ※ 2. 개별기준에 따라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구 분	기 준
1) 실내집회장	가) 강당·회의실 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나) 둘 이상의 강의실 사이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를 쉽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 이를 실내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개별 기준에서 실내집회장을 두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야외집회장	가) 무대, 확장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다)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3)~18) 생략	

2. 개별기준

가. ~ 바. 생략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개요

- 행정권한·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지 평가

※ ‘위탁·대행’외‘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절차·운영방식이 투명한지, 관리·감독 수단이 합리적인지, 책임성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이 있는지 등 평가

평가방법

-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위탁사무의 내용이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 수탁기관이 재위탁 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규정 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사례 1

지방재정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6항 에 따라 재정분석과 재정 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54조, 제5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음(법 제55조제6항)
 -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위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로 지정여부 결정 (시행령제65조~제66조의2)
- 개정안은 법 제5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과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 제65조제3항)

문제점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위탁기관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의 투명성 결여
 - 위탁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자의적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 위탁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의 불법 로비 등 부정청탁이 우려되며,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위탁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에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65조의2(재정진단) ①~④ 생략

⑤ 법 제55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사례 2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것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어 것

② (생략)

③ 정책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융합기술 진흥에 관한 전문성
 2.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3.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광융합기술의 진흥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 전용 업무 공간과 시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 정책협의회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광융합기술 진흥에 관한 전문성, 진흥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문제점

- 전담기관 지정 요건인 전담조직, 인력 및 전용 업무 공간과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이 모호하게 규정하여 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 정책협의회가 지정에 관한 심의 시 세부판단 기준 부재로 과도한 재량권을 보유하여 부정청탁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참고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 ▶ 지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지정요건, 취소요건, 비용부담, 감독규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광융합기술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용 업무 공간, 시설 등의 세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에 개정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74호, 2018. 9. 18., 제정]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8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공무원 요양 중인 사람이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 후 공단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④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비용을 그 지정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제정안은 공무원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제정안 제38조제5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지정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

문제점

- 전문기관 지정 요건이나 지정 과정 등 절차 미비

- 제정안은 심리상담 전문기관 지정 요건, 지정 과정 등 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공무원연금공단’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심리상담 전문기관이 지정될 수 있음
- 심리상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로비 및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가 발생할 위험성 존재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2. 12.)

- ▶ 수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법률의 입안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여 수탁기관이 공단 등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수탁기관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전문기관 지정 요건, 선정 절차 등 구체화
〈또는〉 공단이 자의적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문 삭제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정]

제39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공무원상 요양 중인 공무원등이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 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심리상담은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3) 재정누수 가능성

개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 유발요인을 평가

평가방법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검토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지원수준이 적절한지 검토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결정주체, 결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확보 수단 검토
 -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확인 수단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확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신청 등이 위법한 경우, 지원 취소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사례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대상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은 제24조 제2호가목·나목·바목의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③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 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징수금액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 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하거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법 제17조제1항)
 -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17조의2)

- 개정안은 법 제17조의 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기술료 징수 시, 이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현재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내규로 운영 중인 소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작품의 기술료 면제 제도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

문제점

- 불분명한 기술료 면제·감면 사유에 따른 재정누수 우려
 - 개정안은 기술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 부여
 - 법령상 기술료의 면제 또는 감면 기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기술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여 징수할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재정 누수 가능성 존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기술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 구체화
 - ※ 시행령 상의 기술료 감면 또는 면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필요 시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
 - ※ (참고) 현행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내규)에서는 지원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을 기술료 면제사유로, 중소기업이 1인 이상 정규직 신규 채용한 경우 등을 기술료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에서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대상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은 기술개발 사업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제24조제2호가목·마목 및 바목의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1~5. (생략)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금액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 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징수금액(제3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일부를 감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사례 2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현황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이 재정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규정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문제점

구 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투자 심사 제외 대상	•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투자심사 제외대상의 자의적 선정 및 이로 인한 투자심사 부실 초래 우려
 - 투자심사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달리,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행사 및 자의적인 제외대상 선정 우려
 - 이에,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 저하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재정낭비 초래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투자심사 제외대상에서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에서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령 제171호, 2019. 1. 31., 일부개정]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개요

- 정책결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의견진술 제도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에 참여·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 (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평가방법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참여제도에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참여 기회는 충분한지,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사례 1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
 3.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중지·중단한 때
 4. 제5조제1항의 등록 요건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생략)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현황

- 제정법률안은 산출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요건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산출기관 등록취소 시 청문 절차 부재로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 제한
 - 금번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에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고 있던 민간 산출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 후 기존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 금융위원회가 청문 절차 없이 산출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 제한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저해 우려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12.12.)

인가·허가·면허·등록·승인·지정 등의 취소 및 철회, 법인·조합 등의 설립취소·해산명령 철회·폐쇄 명령, 제조·판매 금지, 자격의 박탈 등과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 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산출기관 등록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

[예 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법률안	개선의견(예시)
<신설>	제00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출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사 입법례]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61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신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사례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림청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행·감리,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등(법 제2조제2호)

- 제정령안은 법의 위임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문제점

- 전문기관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항 및 청문규정 부재
 -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함에도 관련 조항 부재

-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청문 규정 부재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12.12.)

영업허가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등의 제재 외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영업장폐쇄와 같은 제재를 하기도 한다.(p. 134)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등록’을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기재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부에서 지운다’는 의미의 ‘등록말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등록’을 ‘약한 의미의 허가’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행법상 ‘등록말소’보다는 ‘등록취소’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등록의 취소(말소)는 상대방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등록을 취소(말소)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p. 149)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 규정 마련
 - 지정취소·행정처분의 근거 및 지정
 -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마련

[예 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법 개정사항〉

현행	개선의견(예시)
<u><신설></u>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취소 <u><신설></u>	00조(산림기술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0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_____ 4. _____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문) _____ _____ _____ 1. _____ 2. _____ _____ 3. _____ _____ 4. 00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정령안 개정사항〉

시행령안	개선의견(예시)																							
<신설>	[별표 O] 행정처분의 기준(제OO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O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_____ 2) _____ 3) _____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OO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_____ 2) _____ 3) _____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행정처분기준</th></tr><tr><th>1회 위반</th><th>2회 위반</th><th>3회 이상 위반</th></tr><tr><td>가. _____</td><td>_____</td><td>_____</td><td>_____</td><td>_____</td></tr><tr><td>나. _____</td><td>_____</td><td>_____</td><td>_____</td><td>_____</td></tr><tr><td> </td><td> </td><td> </td><td> </td><td> </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유사 입법례]

【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营业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 2의2.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
- 2의3.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인정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의 취소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 관련)**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사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주요 개정내용

- (국내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국내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요건·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패스포트 펀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일반펀드로서의 효력은 유지

-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등록) 외국 패스포트 펀드는 양해각서에 따라 보다 강화된 요건을 갖추어 인정되므로, 일반 외국펀드에 비해 국내 등록 요건 간소화
 - ※ 국내 판매사를 통한 판매·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등 투자자 보호 관련 판매규제는 일반 외국펀드와 동일하게 적용

문제점

〈각 펀드의 등록취소 및 청문절차 관련 규정 현황〉

구분	국내펀드 (집합투자기구)	패스포트 펀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외국펀드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 관련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 기구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2. (생략)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4. ~ 9. (생략)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등) ⑥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18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2. ~ 5. (생략)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 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 7. (생략)
청문 절차 관련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등)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 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청문 규정 부재〉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 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각 펀드(국내펀드, 패스포트 펀드, 외국펀드)의 등록·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중대한 법위반으로, 등록의 당연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임의취소사유로 규정하여,
 -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부정하게 등록하더라도 그 등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부정청탁 등 불법행위의 유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패스포트 펀드 등록취소는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 청문 절차를 통해서 의견진술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 부재로 처분당사자의 권익 침해 우려
 - 국내펀드 및 외국펀드 등록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패스포트 펀드 등록취소 시 청문 규정 부재로 준수부담의 형평성 결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① 각 펀드(국내펀드, 패스포트 펀드, 외국펀드)의 등록·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를 등록의 당연취소사유로 규정
- ②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① 각 펀드(국내펀드, 패스포트 펀드, 외국펀드)의 등록·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를 등록의 당연취소사유로 규정

법률안	개선의견(예시)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 9. (생략) ② ~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 5. (생략)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 7. (생략) ② ~ ③ (생략)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_____ _____ _____ 제1호 및 제3호의 _____ _____ 1. _____ _____ _____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_____ _____ _____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_____ _____ _____ 1. _____ _____ _____ 2. ~ 5. (현행과 같음)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_____ _____ _____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법률안	개선의견(예시)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 ④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④ ———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및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유사 입법례]

【1】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2】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6.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7. ~ 15. (생략)

2) 공개성

개요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도 포함

평가방법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사례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8조(보수교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각 의료기사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2. 영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평가기준

- 공개성, 예측 가능성

현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의료기사 등의 면허종류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와 유예 대상자를 재규정하고,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하여 유예사유가 해소되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문제점

- 해당 전공 재학생과 해당연도의 해당 직종 업무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 면제자와 유예자를 정하도록 하여 공개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
 - 군복무중인 사람은 업무지침에서 계속 면제자로 분류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규칙에서 삭제하는 것과 보수교육 면제·유예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업무담당부서에서 내부결재 등으로 결정 가능한바, 면제자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함으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투명성이 저하

제18조(보수교육) ①~③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한다)
3. 각 의료기사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4. 영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보수교육 면제자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거나 고시하도록 규정
- 교육 유예자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거나 고시하도록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18조(보수교육)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 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0.>

- 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나.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다.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례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2. 목욕장업자

가. 목욕실 등의 청결 및 수질관리

(1)~(7) (생략)

(8) 순환여과식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농도를 매일 1회 이상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하며(다만, 욕조수를 교체한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당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9)~(12) (생략)

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 (생략)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 공중위생영업소중 레지오넬라균 발생률이 높은 목욕·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잔류염소기준, 저수조 청소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순환여과식 욕조수의 경우 매년 1회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하도록 하고,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를 매일 1회이상 측정·기록하여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당한 곳에 게시하도록 함(별표 4)

문제점

- 일부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용객들이 수질상황을 알 수 있도록 욕조수 관리사항을 게시하도록 지정한 곳이 불명확하여 공개성 저해
 - 욕조수 관리사항을 ‘적당한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 숙박업소들의 이용객들이 잘 알 수 없는 곳에 게시할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욕조수 관리사항 게시 장소를 명확화 필요
 - 게시장소를 이용자들이 보기 쉬운 곳이나 출입구 등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2. 목욕장업자

가. 목욕실 등의 청결 및 수질관리

(1) ~ (6) 생략

(7)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그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

(나) 매년 1회 이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해야 한다.

(8)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례 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2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하여야 한다.

1. 단년생 작물의 경작
 2.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의 작물 또는 목분류 등의 경작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농어촌 문화 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
- ② 임시 사용 대상자·기간·절차·사용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5386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 됨에 따라,
 -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의 임시 사용 용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문제점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대상자, 기간, 사용료 등에 대한 공개 미흡
 - 지역주민 등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를 임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토지의 임시 사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 개정안은 ‘임시 사용 대상자·기간·절차·사용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가 부족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임시 사용 허가,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된 업무처리 등 부패발생 가능성
- 또한, 지역주민 등의 입장에서는 임시 사용 대상자·기간·절차·사용료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행정의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임시 사용 대상자·기간·절차·사용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0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22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①~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사용의 신청절차 등 임시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예측 가능성

개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
-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부패행위를 예방

평가방법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 관련규정 이해의 용이성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예측 가능성 판단
 - 모호한 기준 중의적·다의적 표현 등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재량을 행사하거나,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검토

사례 1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5조(교육결과 보고) ①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교육 진행현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복귀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등 교육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로써 보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국외연수의 교육결과 보고서를 평가하여 연수목적 달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군위탁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교육 이수중인 자에 대한 교육 진행현황 중간보고 실시 및 연수 교육결과보고서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그 외 주요 개정 내용

- ▶ 군과 공무원 위탁교육정책의 형평성 유지측면에서 국외 위탁생의 등록금은 공무원 위탁생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실비지급 → 국방부장관이 정한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 각 군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경비반납 심의 누락 사례가 다수 지적되어, 군위탁생에 대한 현황 보고 대상에 군위탁생에 관한 취학·해임, 수료자 보직 현황 외에 경비반납 심의현황 추가

문제점

- 국외연수 교육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평가관련 세부사항 부재
 - 평가결과 연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위탁생은 지급 경비의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평가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개할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외연수 교육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 절차 등 평가관련 세부사항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군위탁생규정

[대통령령 제29790호, 2019. 5. 28., 일부개정]

- 제11조의2(교육결과 보고)** ① 군위탁생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군으로 복귀해야 하며, 복귀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보고하는 서류(이하 "교육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교육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③ 군위탁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등의 교육성과 자료를 제출하여 교육결과보고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결과보고서의 작성·제출·평가 및 교육성과 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사례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생략)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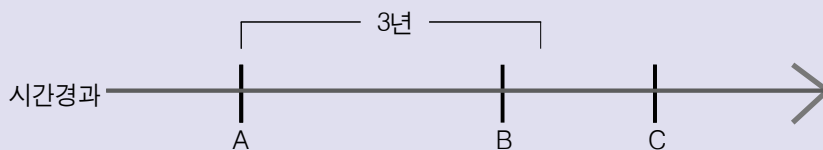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위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를 규정하고, 개정령안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문제점

-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횟수 산정기준*이 미흡하여 재차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적용 관련 예측 가능성 저하

*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령안 별표4 1.일반기준 가.)

- 최초 처분일 이후 3년 내에 재차 적발되더라도 3년이 지나 처분이 이뤄지면 2차 위반에 따른 처분이 아닌 1차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처분일을 늦추기 위한 부정청탁 등의 부패발생 우려



A :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1차 처분일)
B :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2차 위반행위 적발일)
C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2차 처분일)

※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가중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1차 처분일(A) 이후 2차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의 기준시점이 '적발일'(B)인지 '처분일'(C)인지에 따라 가중처분의 유무가 결정됨 → 3년 이내에 2차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3년이 지난 후 2차 처분을 받게 되면 가중처분을 회피할 수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반횟수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재차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생략)

사례 3

소방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8조의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제18조의4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刻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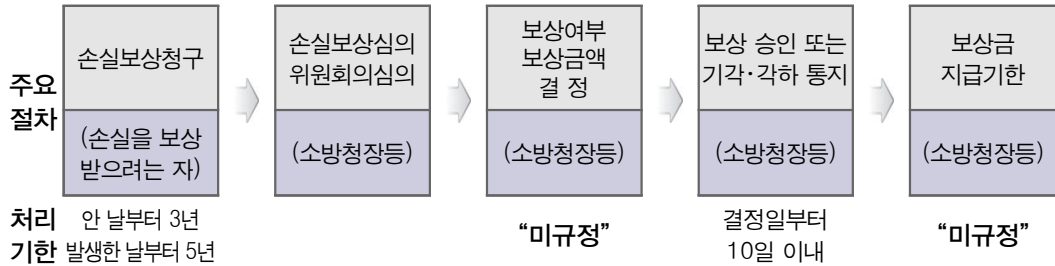
-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는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2017.12.26.신설)
- ▶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규정을 신설 (안 제18조의2~제18조의10 신설)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또는 청구 기각·각하 결정
 - 소방청장 등은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안 제18조의3)

문제점

-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 결정 기한 불명확에 따른 예측 가능성 저해
 - 손실보상 청구서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또는 청구 기각·각하 결정시까지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장기간 방치 우려
- 보상금 지급 기한 미설정에 따른 청구권자의 예측 가능성 저해
 - 보상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대강의 기간에 대해서도 예측 불가

〈 손실보상 지급절차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 처리 기한 설정
-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금 지급 기한 설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82호, 2018. 8. 7., 일부개정]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생략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개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 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 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 행위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자격요건의 구체성, 연임제한 규정의 유무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규정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지를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사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평가대상 조문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생략)
2. 평가위원 제외대상
 -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상호간 평가자
 -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직제상 최소단위 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3)·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 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등 정책 입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및 과제지원시스템의 통합 구축·운영 근거 마련, 연구 장비 및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근거 마련 등

〈 주요내용 〉

-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에 분산되어 있는 회의비, 출장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통합하는 등 연구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활동 보장
- 평가위원 제외대상 축소, 연구과제 중복 예외사유 확대 등
-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연구비 환수금 납부 주체를 연구기관으로 명시하고, 제재부가금을 부정 집행액의 100% 이상으로 상향
- 연구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율이 50% 미만으로 저조한 경우, 간접비를 직접비 집행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 제한
- 연구과제 선정평가·중간평가 등 모든 평가에 대한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
- 학생연구원 등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장 등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 연구 장비 및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평가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은 별표 1에서 정함
 - 같은 기관 소속 전문가는 원칙적으로 평가위원에서 제외되나,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일학과(학부) 및 직제상 최소 단위 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만 제외하도록 개정

문제점

- 평가위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 증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단 구성·운영 시 이해관계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필요
 - 개정안의 경우, ‘비영리기관’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위원 제외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특정 평가위원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자 등과의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될 가능성을 높여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평가위원 제외대상 예외 적용기관 및 범위(별표1 제2호다목 단서조항)〉

	현행	개정령안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비영리기관
범 위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직제상 최소단위 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평가위원 제외대상 예외규정 적용 대상기관의 구체화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625호, 2019. 3. 19., 일부개정]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생략)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 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3)·(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사례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 ②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 (기능)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구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중소기업 및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문제점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부재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위원 통제장치 미흡으로 무제한 연임 등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1)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중소기업 및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59호]
 -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52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① (생략)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③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사례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평가대상 조문

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9.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10.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2 (생략)
- ③ ~ ④ (생략)
-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생략)

제32조(위원장) ~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생략)

※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심의안건 관련 이해관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업무관련 부정·불법행위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부재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 현행법령 검토배경 |

- 산학연 협력 활성화,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행복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4948호, '17.10.24. 개정, '18.4.25. 시행)
→ (주요내용)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연구시설·부지 조성, 공동캠퍼스 운영·관리를 위한 공익법인 설립, 입주승인 및 승인 취소 근거 규정 등
- 캠퍼스 조성·운영계획 수립, 입주가능기관, 입주신청·승인 및 승인 취소 절차 등을 마련한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의뢰**
- 시행령 개정안 제29조의7에 따르면, **입주승인 취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바,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현황

-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법 제29조~제37조)

〈 행복도시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17. 12. 기준]

위원회 구성일		2005. 4. 7.
존속기한		미설정
설치목적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 심의
기 능		기본·개발·실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그 밖에 행복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위원 (총 30명)	위원장	국토부장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1명 (총 2명)
	당연직 (총 11명)	국토부장관, 기재부1차관, 교육부차관, 과기부1차관, 국방부차관, 행안부차관, 문체부1차관, 농림부차관, 산업부1차관, 환경부차관, 행복청장
	위촉직 (총 19명)	행복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 행복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위촉 (교육인 10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기업·금융인 7명)
회의개최실적		총 44회 개최 (출석·서면심의 등) - 추진위 운영세칙, 자문위 구성, 행복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중앙 행정기관등 이전계획, 건설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광역교통개선 대책, 토지공급지침, 공동캠퍼스 조성·운영계획 등

문제점

-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이 없어 특정위원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
 - 행복도시 내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도시·교통·교육·문화·환경·복지시설 등 각종 개발·건설계획의 심의, 공동캠퍼스 입주승인 및 승인취소 심의 등과 관련하여,
 - 위원회 심의·의결내용이 관련 기업·단체, 지역주민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력과 권한 등을 고려 시,
 - 특정인이 심의위원으로 계속 연임될 경우 심의내용과 관련하여 장기 재직하는 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부패행위가 유발될 가능성이 큼

✓ 관련보도

- ❖ **전기사업법 민간위원 연임제한 뒤 중립성 확보해야** ('15.8.5. 기호일보)
 - 전력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 최장 14년이나 연임하는 사례 발생. 3명은 10년 연속, 또 다른 3명은 8년 연임.
- ❖ **기능과잉 혹은 기능부실 뿐인 정부 위원회** ('17.8.25. 헤럴드경제)
 - 총원 24명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공무원 당연직이 과반수(13명) 차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위촉직 민간위원은 2년 임기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 시간이 갈수록 조용히 입맛에 맞춰주는 위원들만 남을 가능성 농후.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미흡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 당시('05.3.18.) 부터 뇌물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됨을 규정하였으나,
 - * 동 위원회는 행안부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 위원회' 목록에도 포함 (경제조직과-2471('16.12.3.))

❖ 「행복도시법」

- 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부정·불법행위 위원에 대한 해촉 등 참여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규정되지 않아 심의·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이 침해될 우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생략)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12.12.31) (p. 362~363)

-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 ✓ 관련보도 |

❖ 전력수급기본계획 민간전문위원 절반이상 정부 연구용역 수행 ('15.7.1. 김제남 의원실)

- 7차 계획 수요·설비소위원회 참여 민간전문가 24명 중 13명이 정부 에너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객관성·공정성 의심. 일정기간 내 해당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배제 방안 마련 필요.

❖ 원안위 전문위원, 정부 용역 572억원 받아 ('16.10.1. 미디어오늘)

- 32명 전·현직 전문위원 중 20명이 활동기간 중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1인당 평균 28억5911만원의 연구용역 수행. 원전정책 자문시 정부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 신청기관과 동일법인 소속 위원이 자문·평가한 신의료기술 적발 ('17.7.4. 쿠키뉴스)

- 보건의료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품목허가 평가대상 임상기관 A법인 소속 위원 2명이 평가에 참여. B법인의 경우 해당법인 소속 위원이 전문가 자문 수행.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원회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 제한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배제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업무관련 비밀 누설 및 비위행위, 회피의무 위반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14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④ (생략)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개요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평가

평가방법

-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모든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 ⑤ (생략)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 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을 상임위원회(1급)
 - (현행) 상임(위원장·부위원장 포함) 5, 비상임 4 ⇒ 〈개정〉 상임 9, 비상임 0
 - ※ 다만, 직능단체(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각 1명씩 임명토록 규정

문제점

- 비상임위원 전원을 상임위원회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 저하 등 우려

- 비상임위원을 두는 취지는 다양한 민간부분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임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할 경우 위원회 관료제화로 위원회 구성·심의의 투명성·공정성 및 독립성 저해 우려
- 유사 위원회(유사 입법예 포함)와 형평성 차원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취지와도 부적합 우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 구성)은 비상임위원은 적정 인원, 상임위원은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토록 규정

참고사항

※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계	상임	비상임	구성
권익위	15명	7	8	위원장1, 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금융위	9명	4	5	위원장1, 부위원장1, 상임2, 비상임5
인권위	11명	4	7	위원장1, 상임3, 비상임7
원안위	9명	2	7	위원장1, 상임1, 비상임7

※ 최근 3년간 공정위 상정안건 : 감소추세

구분	‘15년	‘16년	‘17년
상정안건	993건	759건	702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현행 비상임위원 체제 유지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유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④ (생략)

사례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임원선임 또는 해임내용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연자 등과의 특별한 관계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4.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1.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가. ~ 마. (생략)
2. 제1호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가. ~ 다. (생략)

※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

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가 개정('17.10.24)되어 '18.10.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중에서 해당 허가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이거나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시행령 10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 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설립허가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되었거나,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정지의 명령에 따라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
4. 설립허가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결정한 이사회에서 해당 행위에 찬성한 이사
5. 제3호에 따른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한 임원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의 경우 임원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누락 하는 경우에 법인 투명성 및 임원 책임성 약화 우려
 - 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경력이나 설립허가 취소가 된 법인의 그 취소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해임되었거나, 이사회에서 해당 행위에 찬성한 이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지에 대한 당사자 확인외에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움
 -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를 자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미기재하여 법인의 임원으로 임면될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부패방지 장치 필요
- ※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법인임원 임면보고서에 출연자 등과의 특별한 관계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첨부 서류에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법인임원 임면보고서에 법 제19조 1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첨부하도록 개선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일부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12.>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임원 선임 또는 해임 내용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연자 등과의 특별한 관계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4.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5.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1.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 가. 출연자
- 나.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6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4)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라.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마.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2. 제1호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호나목·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목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

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를 기재합니다.

사례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61조의2(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직무 범위 및 증표 등)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른 인과관계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담당하는 직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료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3.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4. 그 밖에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정보원의 장은 위촉한 인과관계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과관계조사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규명할 수 있다.

1. 의료기기 사용 중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게서 의도하지 않은 증후, 증상 또는 질병 등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 ⑤ (생략)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인과관계조사관 제도

- 도입배경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이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
- 제도개요 :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임명·위촉하여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하고, 이를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에 활용
- 유사제도 : 「약사법」 제68조의12에 따른 ‘약물역학조사관’ 제도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68조의4제1호²⁾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약물의 역학조사를 위하여 조사관(이하 “약물역학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개정령안은 ‘인과관계조사관’(이하 “조사관”)의 자격기준, 수당·여비 지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문제점

- 조사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
 - 직무수행 중 조사관이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청탁, 금품을 받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사관에 대한 별다른 통제장치가 부재하여
 -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부패유발 우려 및 이로 인한 인과관계 조사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저하 우려가 있음

관련 보도자료

- 국토부 조사관-대한항공 임직원 수천만 원 오고가 (시사포커스, ‘14.12.29.)
- 위생검사 조사관에 뇌물... 식당업주들 잇따라 적발 (아주중앙일보, ‘16.12.22.)

2) 약학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조사관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 마련(법 개정사항)
 - 조사관이 직무수행 중 청탁, 금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등 부패통제장치 마련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의료기기법

[법률 제16402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절 행정업무별 사례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1 계획 업무

사례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 **(제정이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함
- ▶ **(주요내용)**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대상지역·지정기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인·허가기간 단축,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평가대상 조문 ①

제16조2(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대상지역 등)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3. 국내외 기업과 연구개발기관, 우수인력 유치에 위한 정주(定住)여건
 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연구기관 등의 집적·연계 가능성
 5.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계획
 6. 그 밖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2(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지구·단지·특구의 일부를 국가 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대상지역으로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국내외 기업과 연구개발기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定住)여건, 지역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연구기관 등의 집적·연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함
- 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문제점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상지역의 세부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할 경우 업무담당부서에서 내부결재 등으로 결정 가능하여 필요 요건의 예측이 어렵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 내재
 - 면적, 거리, 정주여건, 필요한 기업 등에 대한 개념이 불확정되어 예측 가능성이 낮고, 재량권 남용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7호, 2019. 7. 9., 일부개정]

제16조의2(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하 "융복합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복합단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유치·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3.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定住)여건

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연계 가능성

5. 시·도 지원계획의 타당성

6. 그 밖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제6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공사 업무

사례 1

주택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 제18조의2(공사감리비 지급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3항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 ②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3항의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③ 감리자는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금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감리 용역의 일시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감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3조제3항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체와 정산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공사감리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한다.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 **개정이유**

■ **감리비 사전예치 제도 도입을 골자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5459호, '18.3.13.)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시행규칙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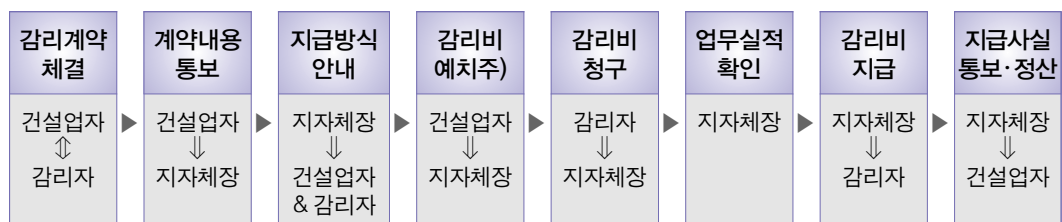
⇒ **(법률개정) 감리비 지급주체 변경 : 사업주체(주택건설업자) ▶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 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게 감리비 지급

※ (배경)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감리비를 지급받음에 따라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 저해 및 부실시공·품질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 평가대상조문에서는 사업주체(건설업자)로 하여금 감리비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비 사전예치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

〈 감리비 사전예치·지급 절차도 〉



주) 기성금(3개월단위) 및 최종대가에 대해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예치하고, 감리자는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지급 요청

- ❖ **감리자의 업무** (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9조제1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사업주체가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방수·방음·단열시공, 재해예방, 시공상 안전관리 등에 검토·확인 등

문제점

-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방법 불명확
 - 감리비 지급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전에 감리자의 업무수행실적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실적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구체적 확인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 지자체별로 업무실적 확인방법을 달리 운영하거나,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등으로 감리자의 업무부담을 초래할 우려
- ⇒ 이 경우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감리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참고〕 관련보도('18.5.15, MBC PD수첩)

❖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감리업체 대표 “화성시 압박 속 준공승인” 증언

-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만 화성 부영아파트 담당 감리업체 대표는 “날인을 거부하고 대기 중이었으나, 화성시 측에서 ‘준공 날인이 거부되면 더욱 복잡한 민원이 예상되니 감리자에게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은 없을 거다’라고 말해 압박 속에서 우리가 날인을 했다”라고 밝힘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방법 구체화
 - 현행 법령 등*에 기 규정된 감리업무 수행실적 보고체계(서류)를 따르도록 하거나, 제출서류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나열하여 명시
-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7조 제6항에서는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업무수행상황 보고 시 감리업무 수행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보고체계 관련규정〉

주택법 제44조제2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감리업무세부기준 제27조제1항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기술검토 3. 공정관리 4. 시공관리 5. 자재 품질관리 6. 감리업무 수행실적 7. 종합분석 및 감리추진 계획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6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① (생략)

-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선급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해지 및 감리 용역의 일시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한다.

3 부과·처분 업무

사례 1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I. 일반기준

1. (생략)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 4. (생략)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구분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생략)	(생략)	위치정보 사업자	(생략)	(생략)	(생략)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생략)	(생략)	(생략)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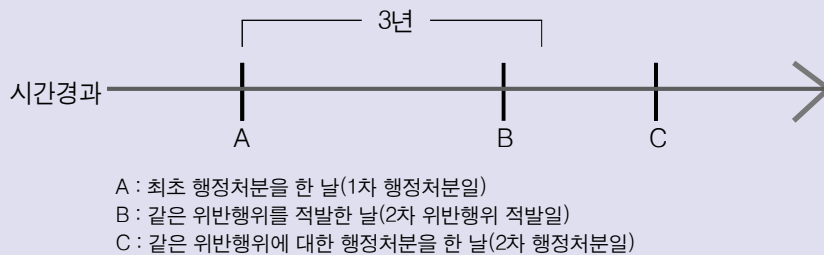
- 예측 가능성

현황

- 개정령안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

문제점

- 위반횟수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처분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해
 -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횟수 산정기준*이 미흡하여 재차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적용 관련 예측 가능성 저하
 - *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령안 별표3 일반기준 2)
 - 최초 처분일 이후 3년 내에 재차 적발되더라도 3년이 지나 처분이 이루어지면 2차 위반에 따른 처분이 아닌 1차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처분일을 늦추기 위한 부정청탁 등의 부패발생 우려



※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가중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1차 행정처분일(A) 이후 2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시점이 '적발일'(B)인지 '처분일'(C)인지에 따라 가중처분의 유무가 결정됨 → 3년 이내에 2차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3년이 지난 후 2차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가중처분을 회피할 수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반횟수 산정을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3호, 2019. 6. 11., 일부개정]

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3]

I. 일반기준

1. (생략)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 4. (생략)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법 제13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개별기준(생략)

4 신고·등록·발급 업무

사례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42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00호 서식의 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에 따라 수립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각 1부
2. 석면조사결과서 사본 1부
3.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4.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5.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이 경우 제출인 등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III-3)

현황

✓ 개정이유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법률 제15097호, '17.11.28. 일부개정)
 - (개정배경) 감리인 지정신고에 관한 사항이 고시로 규정되어, 발주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어렵고, 감리인 교체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현황 파악 불가
 - (주요내용) 감리인 지정 시 관할 지자체 신고 의무화, 감리인의 업무범위 명시, 업무위반 감리인에 대한 벌칙 규정 및 감리인 지정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감리인 지정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 이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변경신고 대상 범위 등 규정

● 석면해체·제거작업 또는 이를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작업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법 제30조)

- 발주자는 작업개시 7일 전까지 '감리인 지정 신고서'와 함께 작업계획서, 감리용역계약서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감리인 지정신고 이후 감리용역계약 또는 감리원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변경신고 필요

☞ 현재 고시에 규정된 감리인 지정·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상향하여 입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제도 개요 ❖

- (목적) 석면건축물 해체작업 시 석면의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정 이행 여부를 확인·감독
- (근거) 법 제30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18.1.15. 환경부·고용부·국토부 공동고시)
- (감리인 업무범위) 위 고시 제3조 (☞ 법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42조의2로 상향 입법)
 -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주변지역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등
- (지정대상·절차) 위 고시 제5조~제7조 (☞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42조로 상향 입법)

석면해체·제거면적 연면적 합산 800㎡ 이상,
석면함유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

발주자 ⇒ 지자체장 (작업개시 7일전 신고)

⇔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성,
타 현장과 중복지정 여부 등 확인

지자체장 ⇒ 발주자 (7일 이내 처리)

문제점

- ✓ 감리인 지정·변경신고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 위반 판단과 제재 여부가 행정청(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있고, 그 과정에 이해당사자 간 부정한 청탁 등의 부패행위가 발생될 우려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라 감리인 지정 또는 변경신고 위반 모두 과태료 (200만원이하)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절차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필요

- 변경신고 대상 발생 시 신고기한 부재
 - 감리인 지정신고 이후, 감리용역계약 또는 감리원 변경 발생 시 언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음
 - * 지정신고의 경우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 (시행규칙 제42조)
- 변경신고 내용 입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재
 - 변경된 감리용역계약의 내용과 변경 배치된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등을 행정청이 검증할 수 있도록 정구가 필요한 서류범위 명시 필요
 - * 지정신고의 경우 작업계획서·감리용역계약서 등 제출 필요서류 규정 (시행규칙 제42조)
-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접수 시 행정청의 처리기한 부재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신고 제도의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되나, 처리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담당자 재량이나 사안에 따라 처리여부와 기간 등이 임의로 정해질 우려
 - * 현행 고시에는 신고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제7조 제1항)

| 사 례 |

- △△군은 민원인의 적법한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2일간 지연 처리 <20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감리용역계약 또는 감리원 변경 발생 시 신고기한 명시
- 감리용역계약 또는 감리원 변경내용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제출서류 명시
-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접수 시 행정청의 처리기한 명시
 - * 시행규칙 본칙 또는 신고서 서식 내에 처리기한 명시
(개정 입법예고안에 '감리인 지정(변경)신고서'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신설 필요)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61호, 2018. 5. 29., 일부개정]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생략)

② 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체 (시공사)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천원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석면해체· 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m ²)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m ²)							
		기간 및 금액		석면해체·제거 감리기간		~		석면해체·제거 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 군 입대 ☐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 부도·폐업으로 인한 퇴직 ☐ 이민 ☐ 사망 ☐ 발주자의 교체 요청 ☐ 퇴사 또는 휴직 ☐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이
아
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사례 2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2호의2 서식]

통일관 ☐ 지정 신청서
☐ 변경사항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기관	명 칭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 소	(우편번호: -)				
총사업비 (백만원)	지자체 지원금	기관 부담금				계
		인건비	운영비	소계		
업무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소속			이메일		
	직위			휴대전화		
변경사항	구분	☐ 시설 ☐ 예산 ☐ 인력 ☐ 교육 운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이하 생략)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현황

- 신설되는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통일관 지정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 제공, 통일교육 및 체험활동을 위한 시설
- 신청서 서식에 신청기관 업무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도록 구성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체험 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문제점

- 신청기관 업무담당자의 일반 전화번호 외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를 의무화하여 업무담당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과도한 준수부담 부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휴대전화’란을 삭제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59호, 2018. 9. 11., 일부개정]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8. 9. 11.>

통일관 ☐ 지정 신청서
☐ 변경사항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기관	명칭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지자체 지원금		기관 부담금			계		
			인건비		운영비	소계		
업무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소속			전자우편				
	직위							
변경사항	구분	[]시설 []예산 []인력 []교육 운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통일관으로 지정 신청 [] 변경사항을 통보) 합니다.

이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지정 신청을 할 때> 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장비 개요서 1부 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1부 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1부 <변경사항을 통보할 때>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2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① 법 제33조제5항 또는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영주증 재발급 신청서에 체류지 입증서류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 원래의 영주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영주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1항 후단에 따라 받은 영주증은 파기한다.

개정이유

- 「출입국관리법」 개정('18.9.21. 시행)으로 영주증을 10년 마다 재발급 받도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공개성

현황

- 「출입국관리법」 개정('18.9.21. 시행)으로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며,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영주증 재발급 신청서에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② (생 략)

③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0.>

④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0.>

제4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법 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법률 제154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2.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②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주증 재발급 신청기한 등이 적힌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영주증은 제1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영주증 재발급 신청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 등의 예측가능 불가 및 불이익 발생 가능성 내재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침익적 작용이 가해짐에도,
 - 재발급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또는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하여도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예측이 어렵고 혼란 야기

법 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3호 생략

4.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한 사람

5. 생략

※ 최소 10만원(3개월 미만)에서 최대 200만원(2년 이상)의 과태료 부과

※ 법무부가 영주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폐공사에 영주증 제작을 의뢰하여야 함. 의뢰 후 수령하기까지 최소 14~15일 소요

- 영주증 재발급 신청서를 법령 등에 미규정 또는 명칭 불일치로 신청서 제시 위치 예측 및 접근 불가
 - 영주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영주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주증 재발급 신청서에 대하여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채,
 - ‘영주증 재발급 신청서’와 명칭이 불일치한 법무부령의 별지 제34호 내지 제34호의3 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로 작성·제출하게 하고 있어 영주증 재발급 신청서에 접근 불가

〈 통합신청서(신고서) 〉

- (서식종류) 별지 제34호(영어), 별지 제34호의2(일본어), 별지 제34호의3(중국어) 등 3종
- (신청내용·방법) 외국인등록, 등록증 재발급,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체류지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10개 업무 중 해당 업무에 체크하여 신청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 ○○일 전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등 영주증 재발급 신청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불이익 발생 사전 예방
 - ※ 법 제33조의2의 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조항을 반영하여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영주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재발급기간 규정 필요
- 영주증 재발급 신청서가 법무부령 별지에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하여 신청서의 공개성 및 접근 용이성 제고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8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①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주증 유효기간 또는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만료일까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원래의 영주증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영주증 발급대장에 적고, 재발급 신청 시 제출받은 원래의 영주증은 파기한다.

5 위탁·대행 업무

사례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이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제15338호, 2017.12.30.)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① 직권으로 또는 ② 이해관계자나 구매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신설)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사고
4.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5.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6.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
7.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구매대행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고

문제점

-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직권 해제 및 위해성 판단 등을 위한 구체적 재량규정 불명확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판단의 기준,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고, 재량권의 남용·특혜발생 우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임을 고려할 때 집행기관의 과도한 재량권 규정
 - 직권으로 해제할 타당한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사례도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집행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과잉 규정으로 권한 남용 여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삭제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위해성 판단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
 - 시행 이후 직권으로 해제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요건, 기준, 방법 등을 정하여 규정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1호, 2019. 10. 21., 일부개정]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 ③ (생략)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의 제조업자,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6 인사 업무

사례 1

고등교육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 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 나. 북한이탈주민
 - 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3.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경우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 가능성

현황

-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에게도 사회적 선호 분야의 진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 정원 외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별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정하도록 규정

문제점

- 신체·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별로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지 그 의미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별로 각각 다른 기준으로 학생이 선발될 우려가 있고, 응시예정자가 각 학교별 기준을 예측하기에도 어려움
 - ※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별로 장애등급의 급수에 따라(신체적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 계층인지 등에 따라(경제적 기준) 학생이 달리 선발될 수 있음
 -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기준을 해당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교육부장관이 구체적 선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31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④ (생략)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할 허가하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나. 북한이탈주민

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

사례 2

세무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세무사법 시행령】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6. (생략)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개정이유

-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세무사에 대한 징계 처분의 신중하고 합당한 징계요구를 위해 국세청 징계요구권자를 변경하려는 것임

-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중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확대(1명→2명)

문제점

- 연임횟수 제한이 없어 위촉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
 - 특정인이 임명될 경우 위원직의 장기 독식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 제한 및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공정성 저해

관련 언론보도 (조세일보, 2017.9.25.)

❖ 세무사들 탈법 일삼는데도....“일벌백계 의지 없었다”

납세자들의 탈세를 조력한 세무사들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내용을 부실검증하거나 세무사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의 각종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탈세 조력 세무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숨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략)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원에 대해 연임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2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7. (생략)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현행 자치법규 평가 사례

제3장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제2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제5절 조치사항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1 추진배경

-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대폭 확대
 - ※ 전국(지자체) 민간위탁 사업 수 9,652건, 사업 총예산 약 5조 400억원('16년 기준)³⁾
- 지자체사무의 민간위탁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
 -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
 - ※ 국가사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17.4.11, 국회제출)
- 특히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당해 지자체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부패 소지가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에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과제 선정·추진 사유

- 제1,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7.9.26, '18.4.18.)에서 공공부분과 연계된 민간분야에 대한 부패 방지정책 추진의 중요성 대두
 - 특히,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 하에서 지방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정책 추진 필요

3) '17년도 발행된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I」(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인용.

2 추진경과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사전조사('18.4~5월)
- 개선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실시('18.6월)
-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18.6~8월)
 - ※ 전국 243개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규정 및 민간위탁 실태 조사·분석
- 개선(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실시('18.7~8월)
 - ※ 학계·법률·실무 전문가(7명)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안)에 반영
-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18.9~10월)

제2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의 사무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

※ 단,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의 위탁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함

- 이에 따라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사무의 민간위탁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총 3곳)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미제정

〈 민간위탁 기본조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당해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의 조례로, 통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등 민간위탁 절차, 지휘·감독 등 민간위탁 전반에 걸친 일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ex>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실제 명칭은 다양

- 그 외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시설의 민간위탁을 규정

※ 예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상 체육시설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상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등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법령

총괄

-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652건(광역 1,005건, 기초 8,647건), 약 5조4백억 규모 예산의 민간위탁사업 운영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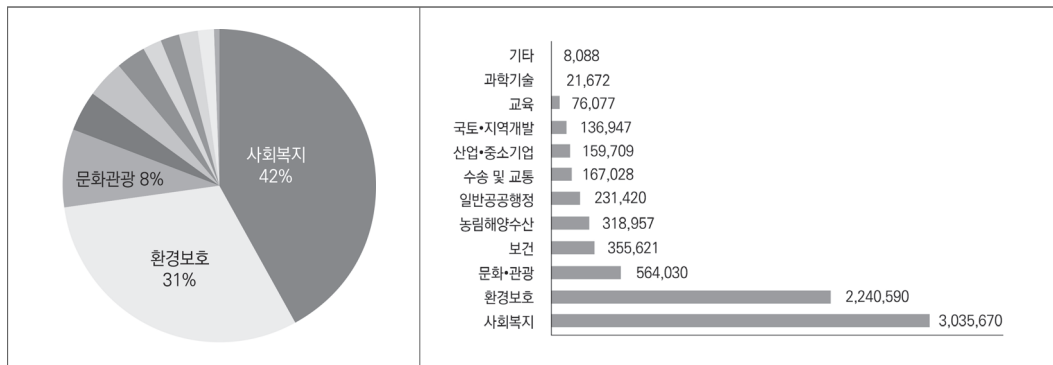
〈전국 지자체(233개) 민간위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사업 수	사업 총 예산	사업별 평균예산
전국	9,652	5,042,669	522
특·광역시	289	213,799	739
도	716	1,106,407	1,545
시	3,161	1,656,963	524
군	2,442	695,486	290
구	3,044	1,342,511	441

사업 유형별 현황

- 민간위탁사업 유형별로 사회복지분야가 41.5%(3조3백억), 환경보호분야 30.6%(2조24백억), 문화·분야 7.7%(5천6백억)로 높은 비중 차지⁵⁾



4)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I」(2017,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인용. 단 부산, 울산, 충남, 경기도 광주시/양주시, 경북 군위군/영덕군/울릉군, 경남 의령군(총 10개 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현황에서 제외.

5)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I」(2017,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

3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업무 흐름도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은 크게 민간위탁 준비 단계 - 진행 단계 - 이후(사후관리) 단계로 구분
 - 민간위탁 준비 단계(①~③) : 적정성 사전 검토, 지방의회 동의 등
 - 민간위탁 진행 단계(④~⑤) : 수탁자 선정, 계약 체결 등
 - 민간위탁 이후 단계(⑥~⑦) : 지도·점검, 감사, 성과평가, 재계약 등



※ 「민간위탁 실무편람」(행정자치부, 2004) 재구성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요약】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유발요인(문제점)		개선방안
위탁 준비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1-1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위탁기준 부재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1-2 민간의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견제 기능 미흡	⇒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1-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1-2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위탁 진행	2.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문제 발생 2-1 수탁자 선정기준 등의 공개 규정 부재에 따른 투명성 문제 2-2 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 참여 등에 따른 심의의 불공정 문제 2-3 이의신청절차 부재로 당사자의 행정절차 참여 보장 미흡	⇒	2.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2-1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2-2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2-3 선정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사후 관리	3.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미흡 3-1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부재에 따른 사후 관리 부실 3-2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절차 부실 3-2 위탁 취소 근거의 부재로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 미흡	⇒	3.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3-1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3-2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3-3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

제4절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경제적 효율성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92.6%(225곳)임
 - ※ A시의 경우 「민간위탁 종합개선 계획」 수립('14. 3.), 기존의 민간위탁사업을 일반용역 등으로 사업관리방식을 전환하였음
 - ※ B도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연구용역 결과, '18년도 전체 73개 민간위탁 사무 중 11개 사무가 민간위탁 부적합 사무로 판정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기준 관련 조례 현황〉

합계(개)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없음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있음
243	225(92.6%)	18(7.4%)

('1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지방의회에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90.9%(221곳) 임
 - ※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지방의회 동의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32곳

〈지방의회 동의안 구체화 관련 조례 현황〉

합계(개)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규정 없음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규정 있음
243	221(90.9%)	22(9.1%)

('1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추11)

민간위탁 부적합 관련 사례

- ✓ △△시는 K복합문화시설 운영사업을 민간위탁한 후, 대표의 채용비리 논란,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문제로 시 직영체제로 전환[‘18.2월 언론보도]
- ✓ A시의 경우,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 수립(‘14. 3.)·시행을 통해 민간위탁 부적합 사무에 대해 관리 방식을 전환하였음

위탁사무 명	전환방식
상하수도 계량기 교체공사 등	일반용역
저소득층 음악·미술 영재 교육지원	보조사업
○○○공원 주차장 운영 등	사용수익허가

- ✓ B도의 경우, ‘18년도 민간위탁사무 총 73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11개 사무가 민간위탁 부적합 사업으로 분석
 - △ △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운영, ○○역관광안내소 운영 등 10개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전환 필요

(‘18.7. 「B도 민간위탁 대상사업 연구 용역」 자료 재구성,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개선 방안

⇒ 이하 개선방안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민간위탁 기본조례’등 에 반영

-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규정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

【조례 개선예시① :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조례 개선예시② : 지방의회 동의 및 동의 내용 구체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조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2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 등이 사전에 공개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과정에 이해관계인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절차가 중요하나,
 - 수탁자 선정기준·배점 등의 사전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의 85.2%(207곳)이고,

〈선정기준 등 사전 공개 관련 조례 현황〉

합계(개)	사전공개 규정 없음	사전공개 규정 있음
243	207(85.2%)	36(14.8%)

(‘1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97.1%(236곳)에 달하는 등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 ○○시 수탁자 선정과정에 수탁기관과 특수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수탁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 사례 지속적 발생

〈이해충돌방지장치 관련 조례 현황〉

합계(개)	이해충돌방지장치 미흡	이해충돌방지장치 완비
243	236(97.1%)	7(2.9%)

* 이해충돌방지장치 완비 여부는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1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아울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지자체가 87.2%(212곳)이며,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54.3%(132곳)이나 됨

- 특히, 수탁자 선정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2곳(대구, 광주) 뿐인 실정으로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수탁자 선정 관련 불공정 논란 사례

◆ 민간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 논란이 된 사례

- ✓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a씨가 수탁기관 대표인 b씨와 ‘특수 이해관계’라는 지적(수탁자 b씨는 심의위원 a씨의 복지관이 속한 재단에서 ‘00~’06년 상임이사를 ‘09~’10년 대표이사 역임) [’17.9월 언론보도]
- ✓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 △ 협회에 재위탁하기로 결정했지만, 심사위원 가운데에는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복지관 운영위원이 2명이나 포함 [’18.3월 언론보도]
- ✓ ▲ ▲ 시 □ □ 구 ▷▷체육센터 운영 민간 수탁자 모집에 □ □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가 응모,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셀프위탁’ 논란 [’17.8월 언론보도]

〈참 고〉

◆ 수탁자 선정위원회

- 민간위탁사무의 적격자 심사를 위해 지자체별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명칭·기능 등 운영방식은 다양
- 대개 위탁사유 발생 시 구성·운영 됨

지자체 명	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서울특별시	적격자심의위원회
충청남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부천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선정위원회 규정 없음

개선 방안

⇒ 이하 개선방안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민간위탁 기본조례’등에 반영

-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 규정 마련
-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 해촉) 마련
 - ※ 아울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 또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문화
- 수탁자 선정결과의 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조례 개선예시① : 선정기준 등 사전공개】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조례 개선예시② :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등】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분의 1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신 설 >	4. _____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현 행	개선안(예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례 개선예시③ : 이의신청 절차 마련】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수탁기관 선정) 위탁기관은 제◎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조 제▽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㉞㉞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조(선정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㉞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부실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75.3%(183곳)에 달함

※ 성과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60곳 중 12곳은 이를 재량사항으로 규정

〈 사후 성과평가 실시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성과평가 미실시	성과평가 실시
243	183(75.3%)	60(24.7%)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민간위탁 사업은 재계약·재위탁 등 연속으로 위탁하는 비율이 높아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사후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나,

※ A시의 경우 ‘17년도 전체 민간위탁사무 350개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 등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가 87.7%(307건)에 달함

재계약 등 관련 현황

✓ A시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현황

- 전체 민간위탁사무 중 재위탁(수탁자를 달리하여 연속위탁)하거나 재계약(기존 동일 수탁자에게 연속위탁)하는 비율이 87.7%에 달함

(‘17.7, 기준)

구 분	신규위탁	연속위탁	
		재위탁	재계약
350개 (100%)	43개 (12.3%)	140개 (40.0%)	167개 (47.7%)

(‘17.12. 「A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 자료 참고)

-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시, 주요 검토기준으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65.8%(160곳)이고,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재계약 시 성과평가 미반영	재계약 시 성과평가 반영
243	160(65.8%)	83(34.2%)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보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56.0%(136곳)에 달함

〈 재계약 시 지방의회 동의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재계약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없음	재계약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있음
243	136(56.0%)	107(44.0%)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관련 판례]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대법원 2011.2.10. 선고 2010추11)

-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차원에서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위탁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나, 이러한 수탁자의 중요한 의무위반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63.0%(153곳)에 달함

〈 위탁 취소사유 명시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위탁 취소사유 없음	위탁 취소사유 명시
243	153(63.0%)	90(37.0%)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후 관리·감독 미흡 사례

◆ 성과평가 부실 등 사후 관리·감독 미흡 사례

- ✓ △ △ 시의 경우 성과평가를 의무로 규정한 조례가 없어 위탁의 적정성 여부 심사와 효율적인 민간 위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2016년 △ △ 시 민간위탁사업은 총 227건으로, 이 중 65.3%(149건)가 성과평가 미 실시[‘17.7월 언론보도]
- ✓ ’13~’15년도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 재계약 총 250건을 분석한 결과, 평가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가 75.6%(189건)에 달함(’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 ○ ○ 구청은 전년도 운영수익을 횡령한 수탁업체와 별다른 제재 없이 재계약, 민선 지자체장은 수탁업체인 상인회를 외면할 수 없는 구조, 상인회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16.2월 언론보도]
- ✓ 민간위탁 계약 취소 관련 사례
 - ’13~’15년도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 계약 해지 사례는 8건 뿐(’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A시의 경우, 민간 수탁기관에 대하여 ’15년도에 91건, ’16년도에 83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계약해지 및 재계약 배제 사례는 0건(’17.12, 「A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 자료 참고)

개선 방안

⇒ 이하 개선방안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민간위탁 기본조례’등 에 반영

-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
 - ※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위탁사업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확히 규정

【조례 개선예시① : 사후 성과평가 실시】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 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조례 개선예시② : 재계약시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재계약) 자치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조례 개선예시③ : 위탁 취소사유 구체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 △ 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⑩년 이상 징역형 및 ◎◎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4. _____ ② 시장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현 행	개선안(예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조치사항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권고 대상기관

-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치기한

- 2019. 12. 31.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대상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민간위탁 기본조례
2.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3.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	

2018
부패영향평가
사 례 집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4

자발적 개선 사례

제4장

제1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제1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1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8조의2(전화기 등 통신수단 사용원칙) ① (생략)

② 기금본부 임직원 및 준법지원실 직원이 공단 계정 외의 외부 상용메일 계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분기별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기밀정보의 공개 및 제공) ① (생략)

② 기금본부 임직원은 정부, 국회 또는 감독기관 외의 기관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및 문제점

- 운용인력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기금 정보관리 대상자료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정보관리 모니터링 대상자료(전화녹취, 이메일 로그자료 등) 증가 추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2,037,498	3,443,238	8,102,257

- 대내외적으로 기금 정보유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관리 대책 마련 요구 증가

개선방안

- 기금본부 임직원 및 준법지원실 직원에 대한 외부상용 이메일 사용 금지원칙 명문화 추진
- 정부, 국회 또는 감독기관 외의 기관에 대한 기밀정보 제공 시 규정서식을 이용하여 준법감시인 사전검토 받도록 통제근거 마련
- 정부, 국회 또는 감독기관 등에 제공된 기밀정보 자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개선결과

-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28조의2(전화기 등 통신수단 사용원칙), 제29조(기밀정보의 공개 및 제공) 개정

현 행	개 정
제28조의2(전화기 등 통신수단 사용원칙) ① (생 략)	제28조의2(전화기 등 통신수단 사용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본부 임직원 및 준법지원실 직원이 공단 계정 외의 외부 상용메일 계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분기별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_____은 외부 상용메일 계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준법 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적 으로서만 외부 상용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단 이메일 계정을 통한 현행업무 수행 이 불가하다고 준법감시인이 판단한 경우 2. 공단 이메일 시스템 장애로 대체 이메일 계정사용이 필요한 경우 3.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으로 인해 공단 이 메일 시스템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기밀정보의 공개 및 제공) ① (생 략)	제29조(기밀정보의 공개 및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본부 임직원은 정부, 국회 또는 감독기관	② _____

2 복리후생관리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3조(관리자) ① 본부와 소속기관 보유사택의 관리자는 경영지원국장과 소속기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택관리자는 사택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설)

제5조(대여기준) ①~② 생략

③ 독신사택은 해당 지역 독신직원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택입주를 희망하는 독신직원이 많을 경우에는 직급, 입사일자,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적정하게 선정 운영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및 문제점

- 소속기관별 체계적인 사택관리 및 사택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나
 - 개정(안) 제3조제3항 2호나목의 의결 과정에서 위원에 위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위원장이 위원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의결권을 행사한 후 가부동수 때 다시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게 됨
- 개정전 제5조제3항에서, 독신 사택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사택업무 담당자 임의로 사택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 사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나
 - 그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라고만 되어 있어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하였음

개선방안

- 개정(안) 제3조제3항 2호 나목에서 회의 의결에서 구성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제5조제3항에서 독신사택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택운영위원회의 세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개선결과

개정안	개선결과
제3조(사택관리자 등) ①~② 개정전과 같음 ③ 사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사택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구성 가. 위원장: 사택관리자 나. 위원: 노사 각 2인 다. 간사: 사택업무담당차장 2. 회의 및 의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택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나. 회의는 <u>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u>하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생략	제3조(사택관리자 등) ①~② 생략 ③ 사택(임원, 소속기관장, 소속병원의 의사에게 대여하는 일반사택은 제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사택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구성 가. 위원장: 사택관리자 나. 위원: 노사 각 2인 다. 간사: 사택업무담당차장 2. 회의 및 의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택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나. 회의는 <u>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생략
제5조(대여기준) ① 사택 입주를 희망하는 비연고지 근무 임직원에게 각 지역의 시설한도에서 사택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택 거주기간은 4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택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제5조(대여기준) ① 사택은 사택 입주를 희망하는 비연고지 근무 직원에게 각 지역의 시설한도에서 사택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택 거주기간은 4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택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개정안	개선결과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사택은 소속기관장과 의사직용으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장 및 의사직에게는 사택을 대여하지 않으며 소속기관별 입주가능한 일반사택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독신직원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③ 독신사택은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비연고지 근무 직원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택입주를 희망하는 독신직원이 많을 경우에는 직급, 부양가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u>사택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적정하게 선정 운영하여야 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병원 일반사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한 사택 제외)에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사택입주자 감소 등으로 추가입주가 가능할 경우 거주기간 4년의 범위 내에서 사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병원 무주택 직원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기간 연장은 1회(2년)에 한한다. ⑤ ~ ⑥ <삭제>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사택은 근무지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임원, 소속기관장, 소속병원의 의사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별로 대여 가능한 일반사택이 남은 경우 제3항에 따른 독신직원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③ 독신사택은 근무지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비연고지 근무 직원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택입주를 희망하는 독신직원이 많을 경우에는 직급, 부양가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u>사택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세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운영하여야 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병원의 일반사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한 사택 제외)에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입주자 감소 등으로 대여 가능한 사택이 남은 경우에는 사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주기간 4년의 범위 내에서 소속병원의 무주택 직원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기간 연장은 1회(2년)에 한한다. ⑤ ~ ⑥ <삭제>

3 희망풍차 긴급지원 운영지침

평가대상 조문

❖ 희망풍차 긴급지원 운영지침

제16조의2(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①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않았으나 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원금액 환수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대상자에게 지원금액 반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환수 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환수대상자가 본조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최종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본사 법무지원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8.1.1]

제17조의2(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상자에 대한 지원종류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대상자의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 ⑨ <생략>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정누수 가능성

현황

● 최근 3개년 희망풍차 긴급지원 현황

연도		2015			2016			2017		
구분		가구	인원(명)	지원금액(원)	가구	인원(명)	지원금액(원)	가구	인원(명)	지원금액(원)
총합		1,487	3,855	3,156,341,429	2,510	6,019	4,519,584,209	2,609	5,928	6,050,874,557
지원 대상	노인	346	566	619,259,296	607	882	858,019,971	509	734	1,025,334,573
	아동청소년	595	1,976	1,259,301,875	663	2,098	1,262,423,841	556	1,741	1,099,151,556
	이주민	105	347	389,829,767	216	615	398,150,272	148	471	546,767,129
	기타	441	966	887,950,491	1,024	2,424	2,000,990,125	1,396	2,982	3,379,621,299
	합계	1,487	3,855	3,156,341,429	2,510	6,019	4,519,584,209	2,609	5,928	6,050,874,557
지원 영역	생계	779	1,939	1,370,864,398	1,458	3,610	2,257,740,439	1,602	3,902	2,440,777,107
	주거	316	762	1,147,001,275	514	1,143	1,286,569,847	871	1,724	2,258,687,035
	의료	293	797	561,154,876	461	1,013	911,388,703	457	921	1,288,845,305
	교육	99	357	77,320,880	77	253	63,885,220	55	188	62,565,110
	합계	1,487	3,855	3,156,341,429	2,510	6,019	4,519,584,209	2,985	6,735	6,050,874,557

-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⁶⁾의 지원인원과 지원예산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문제점

-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의 지원금 지급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어린이집, 요양보호시설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기존 「희망풍차 긴급지원 운영지침」 상에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 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의 2에 의거 ‘슬루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지원중단 및 환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과도한 재량권 행사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통제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6)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이란,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4가지 영역을 지원하는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임.

개선방안

- 복지·보조금은 적합한 대상자에게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원해야 하며,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급 불가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발생·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 운영은 현재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의 사례는 없었지만, 지원중단 및 환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고 ‘솔루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함
- 또한,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원중단 및 환수절차의 미수립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희망풍차 긴급지원 운영지침」 상에 지급중단 및 비용환수 조항을 신설함

개선결과

구 조문	신 조문
제17조의2(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상자에 대한 지원종류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대상자의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 ⑨ <생략>	(신설) 제16조의2(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①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않았으나 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원금액 환수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대상자에게 지원금액 반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환수 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환수대상자가 본조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최종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본사 법무지원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8.1.1] <좌동>

4 리스크 관리요령

평가대상 조문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1.~3. <생략>

4. 이사장이 선임한 외부위원

②~④ <생략>

⑤ 제1항제4호의 외부위원 임기는 선임일부터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재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한다.

1. 부정·부실한 심의로 신보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신보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경우

3. 제2항의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산운용 업무 담당임원이 관련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관련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회는 내·외부위원 7명 이내, 전체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문제점

- 부패행위 발생 등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해임 규정 부재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회피제도 부재 및 제척제도 운영 중이나, 위원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제척 규정 부재

개선방안

- 외부위원의 해임사유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상 내부 통제장치 마련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가능성 제거

개선결과

현행	개정안
제9조(구성) ⑤ 제1항제4호의 외부위원 임기는 선임일부터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재선임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⑤ 제1항제4호의 외부위원 임기는 선임일부터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재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한다. 1. 부정·부실한 심의로 신보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신보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경우 3. 제2항의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12조(회의운영)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산운용 업무 담당임원이 관련 내용의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2. <신 설> ③ <신 설>	제12조(회의운영)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산운용 업무 담당임원이 관련 내용의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2. 위원이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관련 안전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5 사무관리 내규

평가대상 조문

- ② 민원 처리기간을 3일 이하로 정한 경우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민원 처리기간을 7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 동 내규 별표4에 민원사무종류별 처리기간에 ‘즉시’에 대한 시간설명이 없음

문제점

- 민원사무종류별 처리기간에 즉시민원(제증명 발급)이 있음에도 ‘즉시’에 대한 시간 설명이 없어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등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 떨어짐

개선방안

- 민원처리소요기간을 확정하여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

개선결과

● 개정 전·후 개선된 조문 비교(제정인 경우는 제정 후 조문만)

개정안	개선결과
제28조(처리기간) ① (생략)현행과같음 ② 민원 처리기간을 3일 이하로 정한 경우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민원 처리기간을 7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처리기간) ① (생략)현행과같음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u>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 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u> <신설> ③ 민원 처리기간을 3일 이하로 정한 경우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민원 처리기간을 7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제5조의 3(유형주점 출입행위 등 제한)

평가대상 조문

제5조의 3(유형주점 출입행위 등 제한) : 신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부패영향평가 요청) 혁신인사처에서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감사실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임직원 행동강령은 제15조(금품등의 수수금지)와 같이 직무관련자와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의 제한 조항은 있으나, 업무관련자와의 유형주점 출입행위 제한에 대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형행위를 통한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대테러 장비 납품 금품 로비 언론보도

※ 보도일시 : '12. 6. 14(목)

- 언론매체 : YTN, KBS, MBN, 파이낸셜 뉴스등

“대테러 장비 납부업체가 군, 경찰, 공항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금품

• 향응등 로비행위를 전방위적으로 벌임

- 대검찰청등 국가기관에서도 유형업소 출입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우리공사도 사회전반에 깊게 뿌리 내린 접대문화 근절을 위한 제한 기준이 필요

※ 대검찰청 행동강령 개정내용

제17조의2(유형주점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유형주점에 출입하여 유형접객원 등을 상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유흥업소 출입행위 제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할 것
- 개선사항

기 존	개 선
신 설	제5조의 3【유흥주점 출입행위 등 제한】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같이 유흥주점을 출입하거나,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고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7 계약규정

평가대상 조문

현 행	발의안
제1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 용역 등 계약사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서울지역본부를 포함한다)·부산경남지역본부·제주지역본부의 경우 각각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계약사무 담당 이사(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계약담당부서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1급(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경우에는 팀장 이상 직원으로 한다) 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담당부서의 팀장(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경우에는 과장 이상 직원으로 한다)이 된다. <신 설>	제1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서울지역본부를 포함한다)·부산경남지역본부·제주지역본부에 각각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계약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낙찰자결정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기타 한국마사회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개최 사안별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중요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계약담당 본부장. 다만, 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2. 위원 : 각 실·처·부의 장 및 본회 관계전문가 3. 간사 : 계약담당부서의 부장. 다만, 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경우에는 과장 이상 직원으로 한다. <삭 제> ⑤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중요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위원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 이해충돌 가능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 (현행 규정)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능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으로 포괄적 표현
 - (발의안)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불분명한 4개호로 분류 규정
-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 (현행 규정)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장 외에 계약담당부서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1급 직원으로 함
 - (발의안)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장’ 외에 ‘각 실·처·부의 장’ 및 ‘본회 관계전문가’로 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건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및 재량권 행사 통제가 어려울 수 있음
 - 심의안건을 ‘중요한 사항’,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심의안건이 선정될 우려
 -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고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심의안전과 이해관계(해당 계약 진행 부서의 장 등)가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될 경우 심의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으나, 위원에서 제외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해충돌 및 특혜발생 가능성 농후

<대외 동향>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4월)” 시달을 통해 주요과제 중 하나로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확립”을 명시함.

개선방안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안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체성·명확성 확보
-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

※ 조문비교 : 권고(안)

현 행	발의안(안)	권고(안)
제1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 용역 등 계약사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서울지역본부를 포함한다)·부산경남지역본부·제주지역본부의 경우 각각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서울지역본부를 포함한다)·부산경남지역본부·제주지역본부에 각각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계약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낙찰자결정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기타 한국마사회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개최 사안별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중요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1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계약사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 ————— 제주지역본부에 각각 —————. [제12조의2로 신설] ②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개최 사안별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중요도, 특수성을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계약사무 담당 이사(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계약담당부서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1급(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경우에는 팀장 이상 직원으로 한다) 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담당부서의 팀장(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경우에는 과장 이상 직원으로 한다)이 된다. <신 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계약담당 본부장. 다만, 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2. 위원 : 각 실·처·부의 장 및 본회 관계전문가 3. 간사 : 계약담당부서의 부장. 다만, 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경우에는 과장 이상 직원으로 한다. <삭 제> ⑤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중요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위원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위원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계약담당부서가 속한 본부장. 다만, 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2. 위원 : 각 실·처·부의 장 및 본회의 3급 이상 관련업무 전문가 3. 간사 :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장. 다만, 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경우에는 과장 이상 계약담당 직원으로 한다. ④ <삭 제> [제3항과 제4항을 통합] [제2항으로 통합]
<신 설>		제12조의2(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및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2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특수관계에 있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위원회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자문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의 수요부서장 등은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 의뢰(안)	권고(안)
다만, 본회 승마선수단 소속인 사람의 개인소유 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본회 소속인 승마선수의 개인소유 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본회 재직 중인 승마지도자 및 선수의 개인소유 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8 인사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2조(보직해제)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직해제한다. 1.~4. (생략) ②~⑤ (생략)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 회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보직해제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비위행위로 국한되어 있음
- 유사성격의 배임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채용비리는 보직해제 사유에 미해당

문제점

- 직원의 보직해제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공금의 횡령/유용이나 성매매 등은 보직해제 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과 동등한 성격의 배임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채용비리에 대하여는 보직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문제점

개선방안

- (개선내용) 인사규정에 보직해제 사유에 배임과 채용비리를 포함하여 시행
- (기대효과) 인사규정에 따르는 제재규정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을 갖추 부패 발생요소 원천차단을 통한 공정하고 엄정한 신상필별

개선결과

개 정 안	개 선 결 과
제12조(보직해제)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직해제한다. 1.~4. (생략) ②~⑤ (생략)	제12조(보직해제)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직해제한다. 1.~4. (생략) ②~⑤ (생략)

9 계약근로자관리지침

평가대상 조문

제19조(선발 및 재선발)

- ④ 기간제계약근로자 선발을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5일 이상 한다. 다만, 긴급 선발, 극소수 선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기준

- 공개성, 예측 가능성

현황

- 채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모집공고 기간 단축이 가능 하지만, 단축기간의 한도가 설정되어있지 않음

문제점

-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지원자 모두에게 단축기간이 충분히 공개가 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일부 지원자가 준비서류 또는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단축된 모집기간 안에 준비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위험 존재

개선방안

- 모집공고기간 단축시 기간제계약근로자 지원자가 모집내용을 인지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고기간 명시 조치 권고

개선결과

제정사규 개정안	개선결과
제19조(선발 및 재선발) ④ 기간제계약근로자 선발을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15일 이상 한다. 다만, 법령, 정부정책이행 등 채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선발 및 재선발) ④ 기간제계약근로자 선발을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15일 이상 한다. 다만, 법령, 정부정책이행 등 채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u>최소 5일 이상으로</u> 단축할 수 있다.

10 계약직관리지침

평가대상 조문

제17조(채용절차) ① 계약직은(직제규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연봉제에 의한 계약직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채용하되, 채용시기, 채용인원, 채용절차 등에 대하여 인사관리 담당부서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채용을 의뢰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채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선발·모집·심사 등의 개요와 응모자 및 최종합격자 등을 포함한 채용결과를 인사관리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2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그동안 외부 용역사 등을 통해 운영하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 콜센터 상담사 등 총 78명 정규직 전환
- 이에 따라 수시로 인력 채용이 필요한 상황임

문제점

- 특정업무직(무기계약직) 등은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므로 정규직에 준하는 채용관리가 필요

- 그러나 계약직관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업무직 등에 대한 채용과정 전반을 인사부서가 아닌 개별부서에서 직접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 본사(인사부서)는 제주에 위치하고, 특정업무직 등 채용은 육지 근무부서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른 업무 형편을 고려한 조치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련 이슈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개별 부서에서 채용전반을 진행함에 따라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취약요인 발생
 -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우대하는 등 특혜발생 가능성 상존

개선방안

-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부서에서 채용과정 전반을 주관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개선결과

개정안	개선결과
제17조(채용절차) ① 계약직은(직제규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연봉제에 의한 계약직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채용하되, 채용시기, 채용인원, 채용절차 등에 대하여 인사관리 담당부서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채용을 의뢰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채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선발·모집·심사 등의 개요와 응모자 및 최종합격자 등을 포함한 채용결과를 인사관리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7조(채용절차) ①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인사관리 담당부서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계약직의 채용은 해당부서의 의뢰를 받아 인사관리 담당부서에서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보조원과 재산관리인은 사업부서에서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11 회계규정시행세칙

평가대상 조문

제25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생략)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제25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절차) (생략) ③ 제250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패행위의 사실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심의위원회는 자진신고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입찰 참가 관련 부패행위 관련 자진신고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 미비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조항 추가토록 권익위에서 권고함

문제점

- 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금품, 향응, 부당한 취업제공 등)에 대한 예방 및 경쟁의 공정성 제고 노력 필요

개선방안

-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제고를 위한 ‘○○ 청렴도 제고 방안’에 의해 회계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함

개선결과

개정안	개선결과
제25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생략)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생략)	제25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좌 동)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u>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u> (좌 동)
제25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절차) (생략) ③ <신 설>	제25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절차) (좌 동) ③ 제250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패행위의 사실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심의위원회는 자진신고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록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3. 관련 법령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 준수(수요 측면)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 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 (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 집 행 <공급 측면>

①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③ 재정누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 행정절차 <절차 측면>

①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2 공개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③ 예측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 부패통제

① 이해충돌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¹⁾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 · 절차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기간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 가능성)	
신청서류 등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 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관리 · 감독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특혜발생 가능성)	

2] 부과·징수 업무2)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예측 가능성)	
가중 · 감면	▶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 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절한지 검토	
이의 제기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 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 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 가능성)	
체납 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이지 검토	

2)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3 보조·지원 업무³⁾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과를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선정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재정누수 가능성)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공개성)	
관리·감독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손해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 법령⁴⁾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3)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4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지원	▶ 위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관리 · 감독	▶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위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 위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5] 행정조사 업무⁵⁾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⁶⁾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 ⁷⁾ (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제재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5)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6)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제재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7)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6] 단속·점검 업무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 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의 용이성)	
정보공개	▶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제재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8)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 기능 등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 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절한가? (이해충돌 가능성)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해충돌 가능성)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인가? (이해충돌 가능성)	
임기 및 신분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해충돌 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해충돌 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제척·기피·회피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해충돌 가능성)	
제재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이의 제기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8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 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공개성)	
기관장 재량	▶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 제기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절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 규정 확인	
기타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 장치는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3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손해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

	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
--	--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

2)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 ①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 부과 시 고려사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징수 방법, 감경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
- ② 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구성 및 운영 방법, 위원회 설치 시 법령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및 공무원 의제 등 규정
- ③ 행정업무의 위임·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기준, 민간위탁 기준 및 대상선정 기준, 지휘·감독 등 규정
 -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위임·위탁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규정

- ④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기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 규정
- ⑤ 행정정보의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규정
- ⑥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등: 「행정절차법」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행정예고·행정지도 등 규정



201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 행 일 2019년 12월
발 행 처 국민권익위원회
발 간 번 호 11-1140100-000006-10
편 집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T.044-200-766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우편번호 30102)

❖ 부패영향평가 관련 문의 개선 건의는 위 전화번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